

김대중의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들을 실천하는 것을 정치공동체형성의 전제로서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정치공동체형성을 위한 남북간의 정치협상의 전개 자체를 남북간 이질성을 좁히고 화해·협력을 본격화하는 단계로서 사고하는 성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방안은 남북간의 정치협상 이전에 상당한 기간의 비정치적, 비군사적 성격의 관계개선을 전제로 남북통일과정을 사고하는 것으로서 그만큼 남북간의 정치협상에 소극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에 김대중의 방안은 남북간 정치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안고 있고, 그러한 정치협상과 그것이 내포하는 정치적 결단이 남북간의 비정치적,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관계개선의 본격화의 조건이기도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정부의 방안은 화해·협력 단계를 거쳐 형성할 남북정치공동체로서는 연합의 형태를 제시했고, 이 단계 이후는 바로 통일국가를 설정했다. 통일국가의 형태로서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연방제를 고려할 수도 있는 것인지 여부는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방안은 북한의 연방제 형태의 통일국가형태에 대한 암묵적인 배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김대중의 통일방안은 남북연합과 통일국가 중간에 연방제를 삽입하고 있다. 이는 곧 뒤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연방제를 통일국가의 한 형태로서 보지 않고 통일국가의 전단계로 보는 개념적인 혼동을 내포하고 있는 부정확한 단계설정으로 보이지만, 그 의미의 중요한 부분은 북한의 연방제안을 남한의 통일방안논의에 정당한 일부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담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방안논의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방안과 김대중의 방안 차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이 북한과의 정치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성 여부, 그리고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서 인정하고 궁극적인 통일국가형성의 일정한 단계로서 북한과의 연방의 단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암묵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통일경로에 관한 상이한 논의들은 일견 무의미한 차이들 같지만 이와 같이 통일과정에 관한 접근의 근본적 차이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등이 제시한 통일방안들을 단순히 통일경로의 설정으로 보는데 그쳐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것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전반적 접근시각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방안논의는 통일과정에 관한 논의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기도 한 것이다. 통일방안에 관한 논의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경로설정의 문제가 아닌 중요성을 내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남한정부나 정치권에서 논의해온 통일방안논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들이 내포한 개념적 혼란과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지적함으로써 그 논의들이 통일과정에 관한 남과 북한간의 합의를 수렴하는데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개념들로 수정될 수 있도록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적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정부의 민족통일방안, 김대중의 3단계통일방안을 북한의 통일과정에 관한 시각과 비교하면서 이들이 안고 있는 논리적 모순,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내포한 개념들을 추출해 지적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한 평화적 통일과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담은 개념들로 통일과정접근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정치공동체 형성단계의 문제: 연합과 연방의 문제

통일경로에 남북연합단계를 설정하는 것은 남한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북한정부의 최근 태도, 김

대중 이사장의 3단계 통일방안 등에 다같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필자도, 통일경로로서 남북연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화해·협력을 심화함으로써 남북간 공동체형성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는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점진적, 평화적 남북 통합의 제도적 표현으로서 국가연합이라는 중간단계를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연방제를 통일경로의 하나로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연방제란 것은 통일국가의 전 단계(前段階)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국가의 한 형태이다. 미 합중국을 주지하다시피 연방제 국가이다. 그러나 미합중국을 통일국가를 아직 이루지 못한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즉, 연방제란 통일경로의 중간단계의 하나가 아니라 남북의 공동의사나 역사적 조건들에 의하여 선택되거나 거부될 수 있는 통일국가의 한 모형인 것이다. 만일 북한의 민주연방제는 통일국가의 모형으로서 연방제국가를 설정한 것이라면 북한은 장차 통일한국의 국가형태로서 일원적 국가(一元的 國家: unitary state)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한국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것이 국가연합의 단계에서 바로 일원적 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상정한 것이라면 한국정부는 통일국가의 모형으로서 연방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궁극적인 통일국가 상에 대한 남북정부의 견해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며, 반드시 통일경로의 단계들에 대한 견해차이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차이는 남북 정부 지도자들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북 국민들의 결정에 의하여 해소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연합 단계정도로 남북간의 외교적 군사적 공조체제가 일정하게 가능해지고 정치적 이념에 관한 상호이해가 확산되며, 경제생활공동체가 형성되어 경제교류·협력 뿐 아니라 남북간 상당수준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확보될 경우, 그 상황에 가서 통일국가의 모형으로서 연방제를 택할 것인지 또는 일원적 국가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남북 국민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연방제를 넣느냐 아니냐는 그 연합 단계에서 한국 국민전체가 통일국가 모형으로서 선택할 문제이지 우리가 통일경로에서 중간단계의 하나로 넣을 문제가 아닌 것이다.

(3) 정치공동체형성의 조건: 남한의 화해·협력 개념과 북한 시각의 이해

화해·협력을 연합단계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일견 매우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도 논리적 함정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화해·협력이라는 개념의 문제점은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 그것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며 그만큼 막연한 개념이다. 화해협력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정의하기에 따라서 남북간 공동체의 초기단계가 될 수도 있고 연방제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정서적·제도적 동질성이 확보된 단계의 공동체 형성단계일수도 있다. 즉 화해·협력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추상적인 내용이다. 북한의 경우 이 화해·협력에 군축, 외국군사력문제 해결 등의 정치 군사적 내용들을 담아 주장할 수도 있고 남한 측의 경우 불특정수준의 인적교류, 경제교류 등을 주내용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즉 남북한이 서로 합의한 수준과 방식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지 않은

화해·협력 단계 설정은 그것 자체가 통일방안 또는 통일경로 단계설정에 모호성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러한 막연한 개념을 통일방안의 한 단계로 설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실질적 화해·협력을 본격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명확히 제시하는 개념들이 화해·협력이라는 용어를 대신해 남북연합의 앞단계, 즉 그것의 전제인 동시에 그 연합의 형성을 가능케 할 조건들을 나타내는 내용들로 대체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화해·협력이라는 것은 연합형성의 실질적인 전제조건이요 기본명제이기 때문에 화해·협력단계를 통일경로단계에 넣어야 되느냐 마느냐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국가연합 이전 단계에서 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들로서의 실질적인 화해·협력을 제도화·본격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방안들에 대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개념들이 연합의 전 단계로서 개념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연합이든, 연방이든, 이들 개념은 구체적인 제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개념들은 남북간 화해·협력이 진전되고 정치적·경제적 공동체 형성이 진전되는 단계들을 제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들은 남북간에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대립해소와 협력 또는 공조체제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할 제도적 형태들이다.

느슨한 통합상태를 나타내는 국가연합이든 통합성이 높은 연방이든 그런 것들이 실질적 의미를 지니려면,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정치적 동질의식, 경제적 수준과 제도의 일정한 동질화, 외교적 대결에서 공조체제로의 전환, 선언적 의미의 불가침조치를 넘어선 상당한 수준의 군사긴장완화를 바탕으로 한 군사적 공조가능성의 차원으로까지 진전된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서 일단 국가연합의 단계에 도달하면 그로부터 연방제든 일원적 국가로든, 총체적인 정치적 통합은 가속화되게 되어 있다.

그렇수록 우리의 통일방안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할 부분은 국가연합에 이르기까지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에 있어서의 화해·협력의 체제를 어떻게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하고,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향성을 표상하는 개념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화해·협력이라는 개념은 것처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막연한 당연한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의미에서 비판적으로 성찰될 필요가 있다. 화해·협력이라는 개념이 지닌 보단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은 그것이 가진 정치적 성격에 있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한 통일방안 논의에서 이 점이 흔히 간과되어온 것은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불균등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안은 남북한의 통일국가상에 관한 견해를 말한 것이지 통일경로 또는 통일방안 자체는 아니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사실은 그들의 군축제안, 평화협정체제 구상 등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 북한정부가 통일국가의 전 단계로 남북연합형식의 느슨한 국가통합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통일국가의 모습 그 자체로는 연방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그 전제들로서 북한의 대외 경제·외교관계 정상화, 즉 교차승인을 전제한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문제와 군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남한정부는 통일국가의 한 전 단계(前段階)로서 국가연합을, 그리고 통일국가 그 자체의 궁극적 형태로는 일원적 국가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그것을 가능케 할 전제조건들에 대해서는 인적·물적 교류(와 함께 북한 측의 거의 일방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론이 "본래 장기적인 교류, 평화공존의 단계를 건너뛰는 민족성원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방안이며, 최근에는 북한은 이를 보완해 "연방제로 가기 위한 평화정착단계에도 관심을 보여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¹⁴⁾ 그러나 북한의 통일방안의 성격에 대한 그같은 인식은 북한의 통일문제 접근이 내포하고 있는 위와 같은 이중 구조적 차원을 간과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를 우리가 통일국가의 모형으로 수용할 것이냐를 떠나서 북한의 연방제론은 궁극적 통일국가상에 대한 그들의 논의였으며, 그 전 단계로서의 통일과정에 대한 그들의 논의는 군축, 핵무기철폐론, 주한미군론, 남북민족간 정치협상 등의 군사 정치적 제안들에서 찾아진다. 즉, 북한의 통일방안론은 그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정치협상안과 군축안 등 정치 군사적 제안들을 한편으로 하고 통일국가 상으로서의 연방제안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이중구조'의 성격을 띠어 왔던 것이다. 반면에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은 인적·물적 교류를 주내용으로 하는 의미의 주로 비군사적·비정치적 내용의 화해협력이라는 개념을 맨 앞머리에 놓으면서 통일경로를 제시하고 또 거기에 궁극적으로 총선거를 통한 일원적 국가를 염두에 둔 통일국가 상을 한 패키지로 묶어서 제시해 왔던 것이다.

남북간의 통일방안 차이에 관한 논의가 만일 이러한 점을 떠나서 추상적으로 화해·협력, 연합, 연방, 통일국가 등의 개념으로 대표되고 압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남북간 통일방안 대결의 핵심을 놓칠 뿐만 아니라,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여지가 있는 것이다. (남한정부가 연합의 전 단계로 설정한 화해·협력은 북한이 연합과 같은 통일과정전전의 전제조건으로 언제나 제기해온 군축과 같은 군사적 내용은 뻔 개념이라는 점은 이런 의미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를 포함해 많은 분석가들이 북한의 통일방안논의와 남한의 통일방안논의에 대한 평면적 비교를 해 왔다. 우리들 역시 그러한 논리적 함정에 빠짐으로써 종종 본의 아니게 북한 통일방안의 '비현실성'을 부각시키거나, 남북간 통일방안의 진정한 본질적 차이를 은폐하고 마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된다. 이 점이 남북간 통일방안에 대한 형식 논리적 비평이 초래해온 중요한 문제점이며, 앞으로의 통일방안 논의에서는 바로 이러한 평면성을 극복하고 남북간의 실질적 "통일접근방안"의 차이점을 주목하고 이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내용을 담아 남북 서로의 구체적 공명을 이끌어낼 "통일접근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바로 남북통일접근방안의 차이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야 하며 통일경로 또는 통일단계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이 점에 관한 남북간 차이의 조정·타협을 모색해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상해 통일방안단계에 삽입해야 한다고 본다.

(4) 대안적 통일과정의 개념

이러한 취지를 근거로 필자는 3단계 정도의 통일접근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단계는 남북간 "평화·협력"의 체제를 가능케 할 조치들을 설정하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대로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은 화해·협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가운데, 사실상 북한의 주안점인 평화체제·군축체제 건설을 뒷면으로 철수시키기 위해 "화해협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받을 수 있고 또 그간의 통일정책은 그러한 인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것처럼 한국정부의 화해협력이라는 개념이 그로 인해 남북간 통일접

14) 이종석, 앞의 논문, 10면.

근방안의 차이점을 왜곡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시정하고 북한의 강조점을 통합하는 의미에서 "평화·협력단계"라는 개념의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 첫번째의 평화·협력단계는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와 이에 바탕한 한반도 평화체제건설, 인적·물적 교류의 초기단계, 그리고 군사적 신뢰구축의 초기 단계가 우선 이루어지는 것을 상정한다. 이 단계는 또한 더 나아가 실질적 군축의 시작, 인적·물적 교류의 심화, 남북간 경제협력체제의 본격화까지도 포괄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전개되는 것을 상정한 것이다.

이러한 수준의 "평화·협력체제"를 바탕으로 두 번째 단계인 남북연합의 건설은 가능해진다. 이 국가연합의 단계는 단순한 군사적 긴장의 완화차원을 넘어서 일정한 수준의 군축을 포함한 남북간의 폭넓고 직접적인 정치 군사적 대화와 협상이 진행된 것을 전제로 한다. 연합이라는 것을 남북간 협상기구와 제도의 형식적 설치가 아닌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 모든 면에서의 남북간에 상당한 실질적 공조와 협력체제의 가동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연합의 성립은 위에서 지적한 평화·협력단계의 진전 위에서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군축의 최종적 내용들은 평화·협력단계가 아닌 이 국가연합의 단계에서 추진될 부분이 많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이 국가연합단계로의 진입의 조건으로서 평화·협력단계에서 추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면, 이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또는 다자간 안보질서의 형성은 바로 이 남북간 국가연합체제 하에서 남북간의 일정한 외교공조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셋째 단계인 통일국가에 이르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 통일국가가 연방제가 되느냐 일원적 국가가 되느냐는 국가연합단계에서 남북이 같이 구상할 문제이며 결국에는 이미 지적한대로 남북 주민들의 총의라는 역사적 과정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만일 연합단계에서 남북간 경제력, 사회체제 등에서 남한이 월등한 비교우위가 있다고 하면, 북한주민들의 선택에 의하여 일원적 국가로 될 가능성이 높으며, 남한의 사회경제문화체제에 대한 양가적 정서와 경계심이 강하다면 북한주민들은 연방제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¹⁵⁾ 지금부터 통일국가 상으로 연방제를 수용해야 하느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하는 것은 궁극적 통일국가 상에 대한 추상적 논의 수준 나뉘므로 의의는 없지 않겠으나 통일경로상 지금 결정해 단계로 삼입할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궁극적 통일국가형태에 대한 남북간, 또는 남한 내부에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으로 그치고 말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다.

그 대신 우리는 남북연합단계에서 통일국가의 형태를 연방제로 할 것인지 여부를 남북간의 대화를 통한 합의로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김대중의 3단계 방안과 달리 연합

15) 동서독관계와 남북관계가 동일한 맥락은 아니지만, 독일통일이후 옛 동독주민들이 통일에 대해 느낀 문제점은 남한주도의 통일이후 북한주민들이 나타낼 가능성이 많은 태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다. 통독당시와 그 이후의 동독주민들에 관한 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좋은 이념이며 단지 시행상의 잘못이 있었다"는 설문에 대해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한 결과 옛 동독지역주민의 약 60퍼센트 정도가 변함없이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다. 또 통일당시에는 동독주민들의 46퍼센트가 자유를, 43퍼센트는 평등을 더 중요한 가치로 본다고 응답했으나, 1992년의 설문조사에서는 옛 동독 주민중 자유를 더 중요한 것으로 본 비율은 35퍼센트로 떨어지고, 평등을 더 중시한 사람들의 비율은 53퍼센트로 증가했다. Karsten Pohl, "Integrating the German Mind," Paper presented at the Tenth German-Korean Conference on Integration and Disintegration in Europe and Northeast Asia (Seoul, October 1993), chart 15; 김학성, "독일사례를 통해 본 문화적 이질성 극복방향,"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민족통일연구원,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4년 12월), 112면에서 재인용.

단계와 통일국가의 중간에 연방제 단계를 삽입하지 않은 점에서는 정부의 통일방안과 필자의 그것이 동일하다. 그러나 정부의 방안은 통일국가의 모습으로 북한과 합의를 통해 연방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 언급이 없다. 반면에 필자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통일방안은 연방제가 통일국가의 전 단계가 아니라 통일국가의 한 형태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개념적 분석에 기초해 연방제를 통일과정의 한 중간단계로 설정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남북간 합의를 통해 연방제를 통일한국의 국가형태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정부의 인식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다. 물론 일단 연방제로 통일국가를 이루고 난 이후 남북한 국민의 의사의 결집여하에 따라 일원적 국가를 모색하는 것은 미래에 얼마든지 열려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해서 "통일접근방안"을 도식화한다면, 1) 평화·협력단계 2) 남북연합단계 3) 통일국가라는 3단계의 개념이 성립된다. 이것을 3단계방안이라 해도 좋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 해도 좋으며, "평화·협력을 통한 민족통일방안"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개념들과 그들이 포괄하는 구체적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역시 '평화·협력'의 단계이고, 또 이 단계를 본격화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이기도 한 셈이다. 이 단계는 남한이 연합형성의 전 단계적인 전제조건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비정치적, 비군사적 남북교류·협력의 차원과 북한이 남북한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해온 북한의 대외외교정상화, 군축, 평화협정체제 등, 평화체제성립과 관련한 정치 군사적 차원의 개념들을 의도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이 개념은 연합이라는 상당한 수준의 남북간 정치협상과 경제 사회적 통합상태의 성립은 평화협정과 일정수준의 군축에 대한 합의를 포함한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과정(peace process)의 진전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이제 이 평화·협력의 단계에서 부각되는 몇 가지 주요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접근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3. 평화·협력단계의 주요과제 인식

(1) 평화협정문제와 군축문제

왜 평화·협력 단계이며, 왜 또 그 내용으로 평화체제건설과 군축을 강조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 두 가지가 그들 자체로서 남북연합건설단계 진입에 요청되는 경제생활공동체 및 정치공동체 형성의 조건인 동시에, 북한과 남한간의 통일접근방안을 조화하고 포용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평화체제건설의 내용으로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남북이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의 정전체제로부터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가 마무리되기 전에 북한이 남한과의 실질적인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제도화하는데 동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평화협정체제를 통해서 북한의 대외적인 외교·경제관계 정상화의 완전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 정치체제의 안정에 대한 국제적 인정의 확보이며, 또한 그 전제로서 북한이 바라는 군사적 안보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⁶⁾

16) 1958년 시작되어 1963년 막을 내린 베를린봉쇄로 인한 베를린 위기는 동독이 서독과 서방에 대해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면

북한은 평화협정체결에서 남한을 배제하려 함으로써 북한의 협정체결주장의 주요한 목적이 “북한의 남한배제전략”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목적은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열세에 몰려 있는 북한이 자신의 정치 체제적, 군사적 안보에 대한 국제적인 제도적 보장과 대외경제·외교관계 정상화의 제도적 환경 보장이라는 북한의 국가적 목표와 맞물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이 북한과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남북간 평화체제건설과 기타 인적·물적 교류 본격화의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조건이 되어줄 것이다.

평화협정문제에 대한 남북간 의견조정의 방안으로는 역시 1953년 당시 정전협정 당사자들인 중국, 북한, 미국과 함께 한국전쟁의 실질적 당사자였으며 현재도 한반도 군사문제의 실질적 당사자인 남한이 같이 참여하는 '2+2'의 형태를 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국정부의 남북 당사자 원칙과 북한의 법리적 주장을 서로 조정·타협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¹⁷⁾

일본의 와다 하루키 교수도 사실상 '2+2'와 같은 의미에서 “조선전쟁의 모든 경과를 보면 중국과 북조선, 미국, 그리고 휴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은 한국의 四者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가장 타당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¹⁸⁾ 한국정부는 북한의 조미평화협정주장이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의 내용, 즉 “남과 북은 현 휴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협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비도덕적이라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데 남북이 서로 협력할 의무를 공동으로 규정한 이 내용을 북한에게만 적용하는 결과가 되는 비판은 남북간의 건설적인 타협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조미평화협정을 주장함으로써 남한을 배제하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면, 남한 역시 미국의 협정참여를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53년의 정전협정은 “정전협정 서명후 90일 안에 정전협정 조인당사자들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조항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정전협정의 조인당사자로서 마땅히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전쟁이후 줄곧 지금에 이르기까지 실제 한반도 군사정세의 관전을 쥐어 왔다. 바로 이러한 현실과 함께 정전협정이라는 법리적 근거에 따른 북한의 주장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비판하는 것이 평화협정체제전환을 앞당길 논리로 작용할지는 의문인 것이다. 북한이 남한과 공동으로 평화협정체결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면 남한정부 역시 미국이 협정의 당사자로 참여하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정부는 이 점에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대국적인 논리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북한당국에 대해 남한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건설의 주역이 되지 않을 수 없음과 민족당사자해결의 원칙에 대한 북한의 민족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촉구하는 태도가 보다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된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에서 남한을 배제하고 있는 현재의 태도는 한반도 군사정세의 전개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거의 전적인 결정력을 의식한 것이기도 하고, 전시 및 평시작전권 모두를 얼마 전까지도 미국에 양도해온 한국정부의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성, 어쩌면 이같은 종속성을 내포한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비판의 의도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북한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방안이어야지 불합리한 논리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다.¹⁹⁾ 그리고 그 합리적 설득방안은 한국정부가 미국의 협정체결참여에 관한 북한의 주장을 과감히 수용함과 동시에 북한이 남한정부의 협정체결 주장을 수용케 하는 것이다. 즉 남한 측이 북한의 법리적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남북한의 국제적 교차승인을 완성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의 개방적 상호작용에 적극적일 수 있는 조건이 되며, 이는 또한 남북간 외교적 공조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 평화협정체제 건설은 남북이 서로간에 적정한 타협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초기단계들을 실천에 옮기는 문제, 그리고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를 일정한 수준 확보하는 문제와 연계하여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실질적 군축이라는 평화·협력체제의 심화로 나아감으로써 남북연합의 구축이 가능한 2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간 연합정도의 통일과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남북간 군사적 대결체제를 군축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불가피하게 내포한다는 인식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며 이 점을 우리의 통일접근방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북한과의 일정한 군사적 공조체제의 가능성을 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진전이 있을 때 남북연합은 실제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바로 그 점으로 인해 남북간의 평화적 점진적 통일의지에 대한 상호실천과 검증은 바탕으로 연합이라는 일정한 정치공동체의 건설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2) 한반도 평화과정과 주한미군의 문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화·협력'체제 건설 단계에서 한반도 군사안보질서에서 주한미군의 의미와 그

19) 이종석박사 역시 한 논문에서 남북한과 중국, 미국을 엮는 四者協商的 타당성을 지지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을 이 논리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공세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쪽의 남한 배제논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의 조선인민군 역시 1950년 12월 중공군에 작전지휘권을 넘겨준 적이 있는 사실을 공세적으로 활용할 것을 그는 제안했다. (이종석, 앞의 논문, 15면) 결국 민족적으로 불행한 역사적 상황에서 군사적 주권을 외세에 넘긴 경험을 갖는 남북한이 마찬가지로였으며, 그런 만큼 남북한이 서로 양보해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논리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남북한 각자의 군사적 주권의 행사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적 평가와 어긋난, 상당부분 과장된 주장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 역시 남북한간의 상호이해에 바탕한 평화체제전환 촉진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일시 군사주권을 중국에 넘겼다 하더라도 이를 곧 회복함으로써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나섰을 뿐 아니라, 남한의 경우처럼 외국군이 지속주둔하는 가운데 최근까지 평시작전권마저도 외국군에 양도하고 있던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 그러한 과장된 논리의 개발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이해와 양보를 유도하기보다는 불필요한 감정대결과 한국통일정책의 고질적 병폐로서의 '언쟁적 대응논리의 과잉'에 일조하는데 그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서 시작되었다. 이 때 동독과 소련의 목표는 경제적, 외교적으로 열세인 동독에 대한 외교적 승인을 거부해온 서방의 동독정책을 수정시킴으로써 동독의 국제적·외교적 위상을 확보하여 동독의 경제적·외교적 활로를 모색하려 한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Henry Kissinger, Diplomacy (Simon & Schuster, 1994), p.571 참조.

17) 일부학자들은 한반도 평화협정문제를 이스라엘-이집트간의 평화협상에서 미국이 중재자로서만 참여하고 협정의 당사자로서 나서지 않았던 예를 들면서 한반도에서도 미국이 단순히 중재자로서만 참여하고 협정당사자로는 남북한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이러한 논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남북한이 같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2+2'의 방식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필요성을 지적해왔다. 이삼성, “북한 핵문제와 미국의 대외정책,” 『국제정치논총』, 제34집 2호, 1994년 12월.

18) 와다 하루키,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과 조선반도,” 『창작과 비평』, 1995년 봄호, 47면.

위상 및 그 장래에 대한 남북간의 공동의 비전을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본다. 북한은 주한미군철수문제를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간헐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지난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에서 미국 군부중심의 강경론이 거셀 때마다 북한은 주한미군문제를 재차 거론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스스로도 주한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안정자'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북한의 진의는 물론 남북간 대화와 군사정치문제 토의들을 통해서 확인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주한미군의 현재의 존재방식과 활동방식을 긍정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본다. 북한이 다소간에 주한미군의 긍정적 기능을 목인한다 하더라도 그 존재 및 활동방식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보다 적극적으로는 북한의 공식입장이 그러한 것처럼 한반도 평화군축체제 구축과 연계하여 단계적 철군을 주장할 수도 있다.²⁰⁾

이 점에 비추어 우리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막연한 긍정역할론에 머물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군축체제에 연계한 방식으로 주한미군의 존재 및 활동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수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상당수준의 외국군사력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 한반도 남북간 평화안보체제에 대한 비전을 개발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한다.

흔히 남북간 군사력균형에서 남한이 유리하더라도 미군의 한국주둔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로서 동북아 세력균형에 그것이 유리하다는 것, 특히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데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기한다. 동북아의 세력균형 확보에 미국의 존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미국의 동북아 세력균형 역할에 주한미군의 존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첫째, 미국은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대로 아시아태평양국가이다. 한국에서의 군사적 주둔여부를 떠나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정치, 경제, 군사적 실체로서 존재한다. 미국은 그것 자신의 본질상 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의 역할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기제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이러한 미국의 역할이 마치 주한미군 존속 여하에 달린 것처럼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둘째, 주한미군의 철수가 곧 동북아 미군기지에서부터 미국의 군사력 철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즉,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존재라는 것과 주한미군의 존속을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 미국은 주한미군 여하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 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실존하게 되어 있다. 미국과 아시아 사이에 놓여 있는 태평양이라는 지리적 거리가 운위된다. 그러나 태평양은 지리학적 관점에서는 미국의 아태국가로서의 위상에 한계를 부과할 수 있으나 지정학적 차원에서 그것은 미국의 강력한 해상전력에 바탕한 세계적 역할의 핵심무대로서의 의미를 더 강하게 띠어가고 있으며, 태평양이 미국의 세계전략에 갖는 이러한 의미가 강화될지언정 근본적으로 후퇴하는

20) 가장 최근에 정리된 북한의 군축제안으로는 1990년 6월 4일 북한 유엔대표부가 안보리 의장에 제출한 서한을 들 수 있다. "Disarmament Proposal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dopted at the Joint Meeting of the Central People's Committee,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on Council of the DPRK on May 31, 1990," Korea Update, July-August 1990, pp.12-13. 이 제안에서 북한은 한반도 군축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고 있다: 1) 남북한간의 신뢰구축; 2) 남북간의 군비감축; 3) 외국군대의 철수; 4) 군축과 그후의 평화보장. 외국군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군대와 장비를 남북간의 군비감축과 연계해 단계적 방식으로 완전철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위의 문서, 13면.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21세기에 이르러서는 태평양이 부과하는 지리적 거리감 역시 더욱 더 희박해져 갈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말해서, 한국이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에 유연히 대응할 외교역량을 갖추는 데에는 통일한국의 완성이 가장 근본적이고 유일한 조건이다. 일본은 미국의 견제여부를 떠나 일정한 수준 그들이 말하듯이 경제력에 걸 맞는 정치 군사적 능력과 역할을 갖춘 정상적 '보통국가'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한국외교가 할 일은 미국, 중국, 러시아와 일정한 정치 외교적 공조를 통해서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의 속도, 성격, 방향을 조정하는 일이며, 일본의 그같은 정치군사대국화가 곧 일본 내 군부권위주의 및 대외팽창주의의 등장이라는 군국주의화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한 노력은 한국의 정치 외교적 비전과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지, 한국에 주둔한 몇만의 미군이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일본의 정치군사역할확대와 군국주의화를 냉정하게 구별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의 과거청산이라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를 일정한 수준 현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것 자체를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동일시하고 이에 막연하고 감정적으로 방식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군비증강과 주한미군의 반영구적 지속, 또는 심지어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까지도 정당화하는 경향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가 군국주의화로 나갈 가능성을 미연에 억지하기 위한 거시적인 차원의 다국적 정치외교전략이며, 그것을 몇만의 주한미군 지속으로 막겠다는 물리적 발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경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장기적인 수준에서 모색되어야 하고 또 그 장기적인 대책은 남북간 정치군사공조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정치공동체 형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한국군의 무절제한 현대화작업이나 주한미군의 주도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군비증강 지속은 그런 장기적 대책의 모색을 방해할 것이다. 동북아 세력균형에 대한 우리의 기여는 일본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나아갈 정치군사역할확대에 기초한 '보통국가'로의 변화를 현실적으로 수용하되, 일본의 그같은 정치적 에너지를 동북아의 불안정이 아닌 평화의 구축에 기여하는 건설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북아 및 국제정치무대에서 우리의 외교역량을 증대시켜 나가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외국군사력의 주둔지속은 전적으로 우리가 자신의 외교를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온 그간의 두뇌 없는 외교체제에 계속 안주하게 만드는 물적 토대이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독립적이고 거시적인 외교능력의 성장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땅의 외국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치 외교적인 소프트웨어의 배양이다. 이러한 외교비전과 능력의 배양은 곧 남북한 정치군사협상에 바탕해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안보와 평화의 체제를 구상하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처럼 아시아 세력균형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아니면서도, 분단과 대처하는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극복하고 군축과 남북한이 주축이 된 평화체제정착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서 주한미군의 지속이 역기능이 크다면, 우리는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안보와 평화체제 건설을 지금부터 구상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서 주한미군이 갖는 몇 가지 부정적 성격들을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군축보다는 군사력 유지를 통한 "힘의 우위 확보"논리에 바탕해 남북한 군사력 균형 인식과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을 뒷받침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주한미군이 그런 경향을 유지하는 첨병역할을 담당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반도 군사력균형 인

식 및 대응체제의 두뇌 역할을 미군이 담당하는 상황을 영속화시키며, 그런 가운데 한민족 내부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평화정착 노력을 원천 봉쇄하는 경향을 띠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은 또한 미국 정부의 대한반도정책에서 미국내 군사주의적 세력의 영향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물적 토대의 하나로서 기능해 왔다.²¹⁾

따라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한민족 주체의 동북아 정치외교비전 개발과 기반 마련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을 때는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세력균형역할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외국군의 물리적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개발하고 그에 무게를 둘 때만이 미국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철수 또는 증강 등을 한민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는 그간의 실정이 지속되는 것을 막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존속이든 철수든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고 이에 한국이 이끌려 다니는 주한미군 논의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연결된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역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마련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겠다고 할 때 주한미군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촉구하고 한반도에 각종 첨단무기를 이전하거나 한국군에 판매하는 주요통로의 하나로 기능한다. 북한 핵문제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1994년 초 미국이 일단 주한미군에 패트리엇트미사일 부대를 대거 파견했다. 이것은 그에 그치지 않고 장차 한국군에 패트리엇트를 대량 판매하는 전단계로 인식되었다. 이는 주한미군의 존속이 갖는 바로 그러한 경향의 최근의 한 예이다. 또 미국이 주한미군을 전면적이든 단계적이든 철수하겠다고 나서는 경우에도 미국은 이를 북한과의 군축협상에 임하는 한반도 평화정착과정과 연계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대신에 한반도에 남쪽에 불리한 군사력균형이 형성될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남한에 대규모 군사무기판매를 추진하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자신들이 주둔하는 경우에도 그랬으므로 자신들이 철수하겠다고 할 경우는 그 군사판매압력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²²⁾

21) 필자는 한미관계의 본질은 '종속적 군사관계가 중심이 된 관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은 한국의 집권층과 미국내부의 현실주의적 분파와의 동맹에 의하여 그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주한미군의 존재가 그러한 한국집권층과 미국내 보수적 현실주의분파와의 동맹의 중요한 물적·정책채널상의 기초로 작용하고 있는 점으로 크게 뒷받침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문제를 다음 논문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었다. Lee, Samsung, "American Policy toward Korea in Perspective,"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deology and Policies for the 21st Century, held by The Hallym Academy of Sciences, Hallym University, in May 12-13, 1995, at the Intercontinental Hotel, Seoul.

22) 주한미군이 한반도 군비증강의 주요한 채널로 기능하고 있는 최근의 사례로서 1995년 3월 15일자 주요일간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자. 주한미 사령관 게리 렉이 "군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주한미군 증강계획을 밝혔다. 1) 지난 2개월간 약 20대의 다목적 고속이동차량 부산하역; 2) 올 하반기에 24대의 공격용 아파치 헬기 24대 한국배치; 3) 내년까지 군장비 비축의 일환으로 다목적고속이동차량 5백대 추가 한국배치; 4) 오는 5월 미 2사단 배치용으로 M1A 애브람스탱크 150대 추가배치; 5) 그와 별도로 M1A 애브람스 탱크 140대를 유사시 대비 비축할 예정. 미국은 이 부분을 정당화하기 위해 언론플레이: 미국측은 3월 14일 워싱턴에서 「한반도의 평화전망」이란 학술회의를 열었다. 여기에서 미 몬테레이 국제문제연구소(MIIS)의 핵확산금지계획(PNS) 선임연구원 그레그 제라디와 제임스 플로트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부대 배치상황을 강조했다. 미국방부가 주한미군 군사력증강상황을 이와 때를 맞춘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닐 것이다. 국내신문 「동아일보」는 미 국방부의 주한미군 증강 상황에 대한 3단짜리 기사 바로 위에 그보다 훨씬 크게 8단에 걸쳐 워싱턴 세미나의 북한 미사일 배치문제를 다루어 주었다. 어쨌든, 이 사례는 한반도 통일과정의 기본 중간단계인 남북연합 수준의 남북통합에 필수적인 한반도 평화군축체제 건설에

우리는 북한과의 정치협상과 군축 등 군사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변화의 주도권의 중요한 부분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럴 때만이 한반도 평화과정의 추진력이 북미협상이 아닌 남북협상의 차원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생긴다. 이러한 한반도에서의 평화과정(peace process)과 연계해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를 사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물론 주한미군의 즉각적 철수를 의미할 필요는 없다. 주한미군철수는 이 논문에서 밝힌 한반도 통일과정의 첫단계인 '평화·협력'단계에서 진행될 일정한 수준의 남북한 군축과 함께 시작되어 그러한 군축이 더욱 본격화되는 남북연합단계에서 마무리되는 단계적 과정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의 시기보다는 남북한간의 정치·군사협상이라는 한반도 평화과정의 기본 축과 연계해 우리 자신의 시각으로 외국군대의 존재 및 활동방식을 제한하고 결정해 나가는 비전과 노력 그것 자체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존재와 그 활동방식이 언제라도 구조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기초 발제 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

최규업 (전국연합 정책위원장)

들어가며

1945년 2차대전의 종식과 함께 시작된 세계냉전과 민족분단의 역사가 50년 세월을 거둬서 95년에 이르렀다. 이 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류역사는 참으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토록 강고하던 냉전은 이미 해소되었고 전범국으로서 인류의 단죄를 받아왔던 독일은 민족재통합을 이루고 21세기로 재도약하고 있으며, 일본은 식민통치와 전쟁발발에 대한 반성도 없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진출로 정치,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인류에게 아무런 피해도 끼치지 않았던 우리 민족은 여전히 휴전과 분단체제하에서 인고의 세월을 감내하고 있다. 이 50년 동안 우리 민족은 군사적 긴장으로 끊임없이 생존 자체를 위협당해 왔으며 이로 인해 남북의 정치현실은 파행을 거듭하였고, 민족의 자주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남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백 86만 명의 대치라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군사대결을 하고 있으며(통일당시 동서독군은 모두 합쳐 66만 8천명이었다.) 남한 120억달러, 북한 약 30억달러라는 초유의 군사비는 남북경제와 민족구성원의 삶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더욱이나 냉전이 해소된 세계는 이념보다는 자국의 경제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국력을 쏟고 있는 이때, 남과 북이 지금의 대립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지 못한다면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자멸의 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냉전해소와 신질서구축이라는 세계적 흐름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 휴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와 통일로 가려는 우리 민족의 앞길에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오랜 세월동안 실질적인 휴전과 군사적 대치의 당사자였던 북한과 미국은 지난 94년 10월 21일 북미합의이후 경수로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회담을 진행한 결과 결국 6월13일 쿠알라룸푸르 회담에서 완전 타결 짓고 2001년까지 북에 경수로 건설을 완성하고 7월까지 북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북미간 북일간 외교정상화가 멀지 않았음을 뜻하고 북미간의 그 동안 적대관계가 경제적 협력관계로 전환해가며 군사적으로는 평화체제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 모색은 휴전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평화협정체결을 통한 평화체제구축을 제의한 바 있으며, 미국도 내부적으로 평화협정체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등 현실적인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 또한 리펑 총리의 '한반도평화체제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자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표명하고 나섰다. 그 동안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실추되었던 러시아도 남북에 등거리정책을 구사하며, 핵문제 8자회담을 제안하는 등 신질서수립에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정치,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 또한 조일 수교를 추진하는 등 동북아 냉전질서 해소와 새질서 수립은 이제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질서변화의 정점에 위치한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체제구축과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한 민족주체의 노력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평화체제논의를 둘러싸고 여전히 주변강국의 이해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북,미, 남,북간의 관계개선 등 넘어야 할 장벽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체제로 가는 국제질서의 흐름을 활용하고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우리 민족의 평화를 보장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 가는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구성원의 총의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은 휴전체제의 종식으로부터 출발하고 평화협정의 내용에 의해 앞으로의 방향이 크게 규정받을 것이기에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와 평화협정의 내용, 당사국에 관한 내용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1. 평화협정의 제기배경

1) 정전협정으로는 한반도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휴전협정은 교전당사자가 일정기간, 장소에서 전쟁행위를 일시 중단한 것으로 전쟁의 완전한 중단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휴전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전대상자의 일방적인 무력행사나 선전포고에 의한 적대행위의 재개는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이다. 그런 까닭에 53년 7월 27일 체결한 휴전협정에는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의 소집을 명시하여 이 회담을 통해 휴전의 종료와 평화의 보장을 이루려 하였던 것이다.

2) 정전협정의 내용은 이미 사문화 되었다.

원래 정전협정에도 전쟁억지와 평화보장을 위한 안전핀은 마련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정전협정 2조 13항 - KOREA 국경 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금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손모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 1:1로 교환하는 기초 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3조 43항 - 중립국의 시찰소조가 남북한 5개 지역에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한다.

4조 60항 -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당사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발효한 후 3개월 이내에 각기의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

는 것이 바로 이 안전핀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57년 6월 21일 “한국에 근대병기를 들여오고 군사원조, 한국군 근대화 작업을 추진하겠다” 고 발표하고 58년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면서 무제한적인 군비확산의 길을 걷게 됨에 따라, 그리고 조약 발효후 3개월 이내에 외국이 철수해야 됨에도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미군주둔을 영구화시켰고 이와 더불어 1954년 5월 미국 측의 일방적인 철수로 제네바 정치회담이 무산됨에 따라 이 안전장치는 자기의 기능을 이미 오래 전에 상실하고 군사정전위회의는 서로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사항을 항의하는 자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3) 정전협정의 이행기구는 사실상 해소되었다.

정전협정의 일방 당사자인 북한과 중국이 94년 4월 28일과 9월 1일을 기해 완전 철수함으로써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군사정전위는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미측 스웨덴, 스위스와 북, 중국측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로 구성되었던 중립국감시위원회는 91년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열되어 중립위에서 이탈하고 95년 3월 폴란드마저 이 기구에서 물러남에 따라 정전협정의 이행을 담보하고 감시할 기구가 사실상 해소되어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정전협정은 새로운 형태로 대체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94년 12월 미군헬기 격추와 보비 홀 준위 송환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북한과 미국의 정치협상은 정전협정을 백지화한 것으로 더 이상 이 기구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없음을 현실적으로 증명하게 되었다. 이 당시 북과 미국은 장성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나 김정권의 반대로 유보되고 있는 상태이다.

4) 북한의 유엔가입과 북미관계개선은 더 이상 정전협정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남한 측의 조약서명자는 남한이 아니라 UN군사령부였다. 그런데 ① 남북한 UN동시가입으로 이 사령부가 존립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UN사령부는 유엔이 북한을 평화의 파괴자로 낙인찍고 한국에 파견되었다. 따라서 UN신입가입국 자격인 평화애호국(현장 4조 1항)조항에 따라 북한에 대한 평화파괴자 적용이 철회되어 유엔사령부는 해체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UN사를 해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93년 12월 24일 북한을 방문한 갈리 유엔 사무총장이 한말은 이의 단적인 표현이라 하겠다.

또한 ②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은 더 이상 정전협정이 존립될 필요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2. 평화협정과 동북아 정세

평화협정 논의를 규정하는 것은 크게 보아 북미관계개선,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신아태전략, 남한과 주변국의 의도 등이 되겠다.

지난 6월13일 북미간의 완전 핵타결 후 진행되고 있는 북미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조미수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북미관계정상화는 필연적으로 상호간을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휴전협정 및 휴전체제의 새로운 평화체제로의 대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북,미 핵합의 이후로는 물론이거니와 지난 92년 1월 북한의 김용순과 미국의 아놀드 켄터 당시 동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간의 북미간 최초의 고위급회담 이후로 지속된 북미의 접촉 속에서 북미간의 평화보장체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74년부터 미국을 당사자로 시종일관 휴전협정의 해소와 평화협정의 체결을 주장해왔고 핵합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여 왔다. 북한은 자기 체제의 최대위협요소로 미국의 군사위협을 지적하여 왔으며, 이에 맞서기 위한 군사비지출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까닭에 북미관계개선의 핵심적인 문제로 설정하고 관계진전이 되는 현재의 기회에 이 사안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또한 평화보장과 통일을 위해서 평화협정체결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핵합의가 진행되던 지난해 4월부터 체계적으로 정전협정을 무력화해 왔으며 평화협정체결의 문제를 공론화 시켰다. 미국은 최근에도 공식적으로는 휴전체제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헬기사건의 해결을 위해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북한과 직접 접촉했던 점이나 94년말 미국무성이 “한국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 고 언급했던 점, 그리고 지난해 12월초 미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된 ‘북,미간 평화협정체결 가능성’ 보고서 등으로 볼 때 표면적인 입장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휴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평화보장 체제구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방식을 채택하는가는 상황변화에 따른 저울질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현 상황변화의 다른 하나의 규정요소는 올 2월 말 미국방부가 발표한 미국의 신아태전략(EASR)이다. 신아태전략에서 관심을 끄는 내용에는 ‘1)주한미군(3만 7천)을 포함한 10만명규모 아시아주둔 미군의 현 상태 유지와 지역 안보체제 강화 2)대북 지상군 주력은 한국군, 미국과 일본은 전략 해·공군과 정보수집을 주로 담당 3)한미방위동맹 유지 4)남북평화협정 체결 5)한국에 국방비분담 증액과 평화유지군 파병을 요구’ 등이 있다. 금번 미국의 전략은 부시 행정부 이래로 줄곧 강조되어온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사활적 이해를 더욱 강조한 것이며 아울러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도 미국의 강력한 지위와 적극적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는 정치철학을 반영-특히 금번 전략의 입안자인 조셉나이 미 국방차관보의 정치철학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는 ‘미국의 힘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고 있다. 신전략은 이러한 미국의 의지를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군사전략이다. 그러므로 신전략의 핵심내용은 ‘기존의 동맹국 및 우방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개입과 과거 비우호국 및 적대국과의 관계개선을 확대하는 확대전략을 병행구사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개입과 확대를 통하여 향후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려는 전세계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 이후 미국이 담당했던 역할을 수행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신전략 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93년 미국과 아태지역의 교역량이 3천7백40억 달러이며 미국민 2천8백만의 고용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개입과 확대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신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면 첫째 신전략은 주한미군의 감축계획(년·위너 수정안에 따른)을 전면 폐기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변화(한국방어에서 주도적 위치에서 보조적·지원적 위치로, 한국방위보다는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균형자 역할로)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게 할 것이다. 특히 EASI 2(92년에 발표된)의 주한미군 감축계획 3단계(1996-2000)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의 궁극적 목표로-물론 북한의 위협정도, 한국의 억제력 수준같은 상황에 따른다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설정했었는데 신전략에 의한 수정으로 불투명하게 되었다. 또한 신전략은 위 2)의 군 체제에서처럼 한국군을 한미일 연합군체제에 보다 깊숙이 편입시켜 미국의 군수이익을 보장해줄 뿐아니라 지상군중심의 편중된 운용으로 한국군을 절름발이로 만들어 미국에 대한 군사적 예속을 심화시킬 것이다.

둘째, 신전략은 확대전략을 강조하고 있는데 동북아에서 이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 미국은 제네바합의 이후로 과거, 동북아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설정했던 북한의 공세적 전략, 미사일·핵개발 등의 문제대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재래식 군사력의 군축문제를 현실적인 과제로 제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전략에서 남북평화협정체결과 지상군을 한국주도로 재편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결국 북미관계 개선과 신전략에서 드러난 미국의 구도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북한과의 관계진전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구축의 필연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동북아 전체에 대한 영향력확대라는 보다 크고 중요한 목표에 복속되는 하나의 사안 정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협정 및 평화체제문제가 반드시 우리 민족의 요구나 의사에 합치되는 양상으로 현실화 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남한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때 미국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면서 미국의 힘을 활용하여 북에 대한 압박과 대화에서의 우위를 점하려는 정책을 구사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은 평화협정문제에 대해서도 당분간 동일한 형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까지는 평화협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하고 있으나 남북간의 평화협정을 주장하며 평화체제논의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려 할 것이고 미군문제를 평협체결 과정에서 부차화시킴으로써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지위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해 10월 방한당시 리펑 중국총리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서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하고 중국도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북한의 입장과 다른 것으로 평화체제구축에 소극적인 한국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러나 중국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려면 북한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본과 러시아의 견제라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앞으로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구사하고 북한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획득한 외교적 성과를 가시화해 당사자로 참여하려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일본 외교의 총적 목표는 경제력에 걸 맞는 정치, 군사대국화이다. 이는 두 가지 정책을 담고 있는데 그 하나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며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확대이다. 이를 위해 북일수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군사력의 절대감축이 아닌 현상유지적 평화체제 구축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협정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려는 요구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6자안보포럼 등을 제안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추인과 이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러시아는 외무장관 코지레프의 '러시아는 한 개의 눈만이 아니라 두 개의 눈을 아시아로 돌려야 한다'는 발언에서 보이듯 적극적인 동북아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친한정책으로 이 지역의 재편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성과를 가져오지 못함으로 인해 8자회담을 제안하고 북한과의 소원해진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도 없고 제기할 자격도 없는 바 다자간 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남북한 동시외교와 평화체제에 대한 추인을 통해 영향력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러 국내적인 어려움 때문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3. 평화협정의 내용

평화조약(협정)의 내용은 일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지나 통상 일반조항으로 적대행위의 종료, 점령군의 철수, 압류재산의 반환, 포로의 송환, 조약의 부활 등이 있고 특수조항으로 손상의 배상, 영토의 할양, 요새의 파괴, 전쟁전범자 처벌 등이 포함되는 것이 상례이다.

이런 상례에 근거해 볼 때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크게 ① 적극적으로 완전한 평화보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상호간 적대적 군사행위의 완전중단과 한반도에 집중된 비현실적인 병력 및 무기의 감축, 도입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군축에 관한 내용, ②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실현에 관한 내용, ③ 한국전쟁의 주요당사자이면서 유일하게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지위, 역할변화 및 철수에 관한 내용, ④ 남북관계의 성격규정과 통일문제에 대한 담보의 내용, ⑤ 평화협정체결에 따라 남북이 체결하고 있는 각종 군사조약의 평화협정에 기초한 조정과 폐지에 관한 내용, ⑥ 이를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 및 그 실행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져야 하며 기타 부속적인 내용이 설정되어야 한다.

전쟁전범자 처벌이나 영토의 문제 등은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특수성상 소모적인 논란을 초래하여 평화협정체결 자체를 요원하게 할 수 있으므로 평화협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적대적 군사행위의 완전중단과 군비축소

- a) 적대적인 군사행위를 완전중단한다.
- b) 휴전선에 배치된 군사무력을 후방으로 철수한다.
- c) 군병력이 통상 전체인구의 절반으로 설정됨으로 남북각각은 30만으로 감축한다.
- d) 동수감축이 아닌 절대감축을 실행한다.
- e) 인원의 감축만이 아닌 군비의 상호균형과 절대감축을 실현한다.

② 한반도에 비핵지대화를 실현한다.

- a) 비핵화선언에 근거해서 한반도에 존재하는 모든 핵무기를 철거하고, 이를 확인한다.
- b) 핵무기의 제조, 반입, 저장, 운반을 전면 금지한다.

- ③ 국제연합군사령부는 해소되고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 a) 평화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현 유엔군연합사령부는 해체되고 철수해야 한다.
 - * 1975년 제 30차 유엔 총회에서는 국제연합군 사령부의 해소와 주한미군 철수가 결의된 바 있다.
 - b)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 북한과의 적대행위가 만료되고 남북이 평화를 보장하는 군축을 실행하는 것에 따라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 c)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는 남북이 군축하는 것에 비례해서 실시되며 완료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완성한다.
 - d) 한미연합사는 남한의 군작전지휘권을 완전반환해야 한다.
- ④ 특수한 남북관계규정과 통일의 보장이 담겨야 한다.
 - a) 교전단체였던 북한이 유엔에 이미 91년에 가입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국가로써 인정된다.
 - b) 남북은 합의서에 언명한대로 남북관계가 통일로 가는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임을 인정한다.
 - c) 유엔과 미국(주변국)은 이를 지지한다.
- ⑤ 남북상호간에 체결한 군사동맹은 자주적이고 평등하게 재편한다.
 - 한-미간, 조-중간에 체결된 군사조약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것과 아울러 군사자동개입조항등을 변경한다.
- ⑥ 위의 조항을 이행할 조직을 구성한다.
 - a) 평화협정체결의 당사국으로 평화위원회를 구성한다.
 - b) 위 평화위원회에서 위 조항을 이행한다.
 - c) 위 평화위원회는 평화협정체결이행을 강제할 권한을 갖는다.
 - d) 평화협정이 완전이행되는 시점에서 위 위원회는 해소한다.
 - e) 위 평화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감시를 위한 중립국평화위원회를 구성한다.
- ⑦ 기타
 - a) 인도적인 조치로 50년 전쟁당시의 포로송환과 미군유해의 완전송환을 확인한다.
 - b) 평화협정 이행임무를 위배하는 것에 대한 강제적 사법처리 조항을 설정한다.

4.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

1) 남북한의 쟁점사항

평화협정 체결이 한반도 정세의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체결 당사자 문제를 둘러싸고 각국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우선 남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 문제를 놓고 보이고 있는 건

해차이를 8차례의 남북 고위급회담의 대화를 통해 살펴본다.

<남> 현재의 불안한 휴전체제를 하루속히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교전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지금까지 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해 왔다. 또 앞으로 이 땅에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를 감축하며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당사자이다.

<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조미 사이에 해결할 문제이다. 우리 북-남관계는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면 된다.

<남> 남북쌍방은 자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해야 할 주인이며, 귀족도 과거 남북간의 평화협정을 제의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북> 정전협정 서문에 본 군사정전협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의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유엔군 총사령관을 타방으로 체결됐다. 그쪽은 실제상으로 정전협정 체결을 반대했다. 마지막 회담 장에도 안나왔다. 그 휴전협정을 국회에서 무효화 결의를 채택했다.

<남>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휴전협정을 반대한 것은 사실이다. 틀림없다. 그러나 휴전협정 체결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53년 6월19일 조선인민군 사령관과 중국의용군 총사령관이 유엔군 총사령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남측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준수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7월12일 한국정부가 정전협정 이행약속을 공포했다.

<북> 남한의 주인이 남측이라는 것. 그렇게 당당한 주인이면 참으로 좋겠다. 그런데 군사적 문제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군권문제라든가, 핵무기 발사권한 문제라든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에게 대담해 달라.

<남> 한국전쟁이 왜 발발했느냐. 어떤 누구누구 사이에 싸웠느냐. 이런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휴전협정 이후 지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군대가 누구인가. 남북한 군대다. 평화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도 남북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이 주체로서 정전문제를 평화문제로 바꾸는 협의를 해야 한다. 그것을 부정하면 문제해결이 하나도 안된다."

이러한 대화를 살펴볼 때 남북한 사이의 대립은 남한정부의 당사자자격 유무이다. '휴전협정 당사자와 평화협정 체결 능력'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로 남한정부의 당사자 자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은 북-미 당사자, 남한은 남-북 당사자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2) 평화협정 당사자에 대한 북한의 주장

북한은 62년 10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회의에서 남북한 공격불행사에 대한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였다. 63년 9월에는 공화국 창건 15주년 기념보고를 통해 미군철수의 조건 아래 남북이 서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였다. 72년 1월 김일성주석은 "우리는 남북평화협정을 맺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킨 조건에서 남북조선의 무력을 대폭 줄일 것을 주장한다"고 하여 평화협정체결 후 미군철수의 입장을 밝혔다.

74년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에서는 조미평화협정을 주장한다. 이 회의에서 허담은 "북과 남 사이

의 대화의 전 과정은 남조선에서 미국군대가 남아 있는 조건에서는 긴장 상태를 가시고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없으며 도대체 남조선 당국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족의 내부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데 대하여 호상합의한 지 만 2년이 가까워지는 오늘날에도 남조선이 미제국주의의 지배 밑에 놓여 있고 일본군국주의 재침의 활무대로 되고 있으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외세의존정책을 버리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그에 더욱 매달리고 있는 사실은 그것을 논의할 여지 없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군사적 대치상대의 해소와 평화협정체결문제를 아무리 논의하여도 의의가 없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조건 아래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을 확실히 보장할 만한 실천을 가진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응당합니다"고 보고했다.

평화협정이 남북한간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한미 양국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법률적으로 보아도 타당성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아무 실권도 못 가진 식민지 고용병들과 마주 앉을 수 없다(95.3.9)"고 지적하면서 남한 배제입장을 강력히 드러냈다.

3) 북한의 주장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박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남한 정부의 반박 논리는 다음과 같다(한국정부의 논리를 수정없이 그대로 기술한다).

첫째, 정전협정 서명당사자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조약의 당사자는 '법인'이어야 함으로 정전협정의 일방 당사자는 '법인'인 UN(헌장 제104조) 자체이며, UN의 '기관'인 UN군사령부나 그 '담당자'인 사령관은 될 수 없다. 그리고 협정의 서명자는 UN군사령관이 아닌 미국대표가 아니다. 북한은 'UN군사령부를 대표한 미합중국대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대표'의 법리를 오해 또는 혼동한 데 지나지 않는다. 조약을 체결하는 '대표'는 자신을 임명한 정부나 국가의 이름을 현명하고 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협정 서명자인 마크.W.클라크 미육군대장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라고 서명함으로써 UN의 대표임을 현명하였을 뿐, 미합중국의 대표로 서명한 바는 없다.

둘째, 한국은 UN군 성원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한국은 직접 UN군이 아니라 하더라도, UN군에 작전지휘권 이양공한(50.7.15)을 통해 UN군사령관이 서명한 정전협정에 참여, 그 효력을 준수, 이행하고 있는 실질적 전쟁당사자이다. 이양된 작전지휘권 속에는 정전협정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미평화협정 요구의 부당성에 대하여

미국이 협정의 서명자라는 주장은 '대표'의 법리에 명백히 모순될 뿐 아니라,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정전협정 서명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국제관례상 북한주장의 논거는 타당성이 없다. 정전협정은 그 전문에 "이 조약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규정, UN군사령관의 협정 체결권이 군사적 사항에 한정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평화협정은 전쟁을 종료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교전당사자간의 명시적 합의로, 정치적 조약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한국이 UN 총회 결의(53.8.28)에 따라 제네바에서 열린 평화회의(54.4)에 참석한 것도 평화협정의 당사자임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의 의도에 대한 남한정부의 견해

국제법상의 법리나 현실적 타당성이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는 지난 73년까지 한국과의 평화협정을 요구하다가 그후 대미평화협정 요구로 전환한 데서도 드러난다. 북한은 지난 73년 미국과 월맹이 파리에서 「베트남전 종식과 평화회복에 관한 협정」을 체결, 미군을 철수시킨 데 고무, 그 이듬해인 74년 미의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대미평화협정을 제의(3.25)하게 된 것이다. 즉 북한은 베트남의 사례에 고무 받아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여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 남한정부의 분석이다.

다섯째, 군사정전위 수석위원의 교체에 대한 북한의 반박에 대하여

노동신문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군사정전위 수석위원을 한국군 장성(황원택 소장)으로 교체하였다고 비난하면서 정전협정에 의하면 "쌍방 수석대표는 우리(북)와 미국 측에서 나오게 되어있다"고 주장하였다(평양방송). 정전협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협정 제17조는 협정의 준수와 집행책임이 협정서명자(UN군사령관)와 그 후임 사령관에 속한다고 규정했을 뿐이다. 이에 따라 UN군사령관은 군사정전위 우리측 대표를 임명한 것이다.

여섯째, 정전협정과 제네바 회담에서 남한을 당사자로 인정하였다.

한국이 '반공포로'석방을 단행(51년)했을 때 공산군측은 UN군사령부(UNC)는 물론, 한국과 그 군대도 협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또 그후 계속 개최되어 온 군사정전위에서도 한국 측이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날조선전을 일삼아 왔다. 이는 북한이 처음부터 한국을 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로 인정해 온 증거가 아닐 수 없다. 협정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협정준수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제60조)에 따라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고위정치회담을 결의(53.8.28)한 바 있는 UN은 이 회담 참가자를 지정, 이에 따라 한국은 제네바 평화회의(54.4)에 참석한바 있다.

4) 최근 남북한의 입장 변화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이 당장 불가능하다면 현행 정전협정으로부터 평화협정의 사이에 해당하는 '중간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동아시아연구소의 방북단이 95.2.25일 밝혔다. 방북단은 95년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 체류하면서 북한의 당 및 정부 고위인사들과 면담하였고, 단장은 김영진 교수(조지워싱턴대 교수·동아연구소장)이다.

김교수는 "북한 인사들과의 대화에서 북미평화협정 문제에 대해 유연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북한의 핵심요인들은 현시점에서 평화협정이 불가능할 경우 '중간적인 조치'를 검토해보면 어떠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측은 그러나 그 '중간적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설명하지 않고, 앞으로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자리에서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김교수는 말했다.

남한정부 역시 평화협정은 시기상조라는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여 평화협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입장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남북한 직접협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자격확인 과 협상이 필요하고 국내법의 정비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며, 또 유엔 내에 남북한간 '남북한 협력위원회'를 구성, 상호협조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방안은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이다.

둘째, 휴전당사자(한국, 북한, 미국, 중국) 4자회담(2+2)으로 평화보장 관련회의를 가지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최근 방한한 이붕 중국 총리의 “남북한을 포함한 관계 각국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발언과 끝이 이어 나온 한 외무부장관의 “선 남북 평화협정 후 미중확인”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 방안에는 유엔평화유지군(PKO)의 비무장지대 국제적 감시, 군축 등이 논의되어야 하며 남북한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과 체결한 동맹조약의 수정을 검토하는 것까지 담겨 있다.

셋째, 남북한이 각 분야(군축 3통협정, 교육문화협정 등)의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다. 이는 평화협정을 통하지 않고서도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들 방안 가운데 외무부는 두 번째 방안인 2+2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주변 강대국들의 다자논의에 대한 북한의 입장

북한은 “남조선 괴뢰를 비롯한 일부세력들이 다자회담을 운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체제 수립을 위한 우리 제의를 방해하려 하고 있다(94.11.22)”고 한반도 평화문제를 국제화하는 것을 비난한 바 있다. 북한은 ‘다자회담’을 거론하는 ‘일부세력’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일본 또는 러시아를 가리킨 것이 아닌가 관측된다. 일본은 동북아의 평화안전보장을 위해 남북한과 미, 중, 러시아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6자 안보협의체 구성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러시아 역시 남북대화를 촉구하면서 그 동안 러시아가 북한 핵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제의(94.3)한 바 있는 남북한 등 ‘8자회담’을 다시 거론했다. 러시아는 이같은 회담은 “북태평양지역과 나아가 아태지역의 집단안보체제를 확립하는 토대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일본과 러시아 등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자간 협상방식으로 하는 것을 명백하게 부정하고 있다. 북한은 일부 나라들이 ‘다자회담’을 거론하는 것은 “조선문제에 개입하여 어부지리를 얻어 보려는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문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나라들이 개입한다면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수립의 앞길에는 복잡성만 조성될 뿐이다”고 보면서 강하게 반대하였다.

북한은 이같은 다자간 안보대화기구 논의에 대응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쌍무적 군사조약 폐기, 역내 외국군 및 기지철거 등 4개항의 선결조건을 내세운 바 있다(93.3.13).

한편 갈리 유엔 유엔사무총장은 김일성 주석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방북(93.12.24~26)중 베풀어준 호의에 사의를 표시하면서 “정전협정을 영원한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당신(김일성)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것으로 중앙방송이 94.1.16일 보도했다.

6) 미국과 남북한에 의한 해결노력이 필요하다.

남측 당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남북쌍방 당국은 현재 한반도의 남북 양지역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남북이 당사자가 되어야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측 당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미국이 평화협정을 보장할 실질적인 실천력을 가진 당사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 문제는 휴전협정과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과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평화협정은 내용상 전쟁상태로 점철된 과거의 적대적 관계의 법적, 제도적 청산과 동시에 평화협정에서 규정하는 제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실천함으로써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는 이행문제까지를 내포하는 것이다. 휴전협정의 조인 당사자가 평화협정의 조인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 역시 휴전협정체결 이후 40년이 넘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달라진 국제환경에 의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잡성을 띤 문제이다.

따라서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통일의 조건을 형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현 시점에서 한반도의 평화보장과 통일문제에 실질적인 정치 군사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관련국은 미국과 남북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전쟁의 참전과 휴전당사자이고, 아직까지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고, 한국군 전시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협정의 당연한 당사자이다. 이것은 당사자 문제의 초점이 남한의 당사자 자격 유무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의 참가로 모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논의들이 대부분 남한정부의 당사자 자격에 대한 시비였다. 이러한 논의는 남한정부가 당사자 자격이 있으면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고, 남한정부가 당사자 자격이 없으면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은연중에 남한정부가 당사자 자격이 있으면 미국은 불참해도 된다는 논리를 만든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은 미국의 당사자 문제이다. 미국이 명백한 당사자이므로 미국이 참가한 상태에서 남한이나 중국의 자격여부를 논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가한 중국인민군을 1957년에 이미 철수하였고, 그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중국을 당사자로 참가시키는 것은 불필요할 뿐이고, 중국만이 아니라 러시아나 일본 등 주변국까지의 개입만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남한은 65만의 병력을 가지고 북한과 대치해왔기 때문에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중요한 담보자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남한은 지금까지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이양했고, 아직도 평시작전통제권만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불가침을 약속하였으므로 남북한의 관계는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불가침과 군축을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남한정부의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 자격 유무에 대한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불가침과 군축을 약속하였다는 것은 남한정부가 군사적 대결의 한 주체임을 상호인정한 것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평화협정의 이행을 통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상을 고려할 때 평화협정은 결국 미국이 참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남북한이 함께 노력해서 풀어야 할 문제이다.

5. 결론

1) 휴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미국은 평화협정체결의 분명한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

현재의 휴전체제는 언제든지 전쟁의 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불안정한 체계이고 남북한의 군사대결을 심화시켜 온 근본적인 원인이다. 또한 탈냉전의 국제정세와 북미관계개선의 추세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휴전협정은 즉각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미국은 휴전체제를 존속시키려는 정책을 중단하고 평화협정의 분명한 당사자로서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지속시켜온 대결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은 평화협정을 통해 매듭지어져야 한다. 미국 측이 현재 표방하고 있는 자신을 제외하고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고되어야 한다.

① 미국은 한국전쟁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면서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지휘권을 포함하여 한반도에 실질적인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의 원인 제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②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간에 지상군을 중심으로 한 군축을 실현하는 경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존재, 월등한 정보통신력에 기반한 미국의 해공군력, 한국군의 군현대화(병력감축과 군사력의 질적 현대화) 등의 요인으로 북한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는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요원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2) 한국정부는 군작전권의 완전회복으로 자주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한반도의 평화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와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평화협정체결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실현은 그 누구도 아닌 남과 북이 당사자로서 책임 있게 나서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전시작전지휘권이 미군사령관에게 귀속되어 있는 조건에서 평화실현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군사전략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또한 한반도 평화보장에 대한 어떠한 설득력 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사문화되고 있는 정전협정체제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의 평화실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미,일에 연속적이고, 한반도 평화보장에 역행하며, 한국군의 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미국의 신아태전략(EASR)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당사자로 나서야 할 것이다.

3)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국민에게 분명히 밝히고, 부당한 방위비 분담 증액요구나 한반도에의 공격형 무기의 증강과 반입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서 한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이 되어도 상당기간 현 수준의 주한 미군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새로운 군사정책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더구나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의 대부분을 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이 미국의 정치, 군사적인 이익과 무관하지 않는데도 방위비 분

담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한미군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땅과 시설들에 대한 주둔비를 지불하기는 고사하고, 주둔비용을 증액하라는 요구를 한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최근 신문에도 보도되었듯이 한반도의 평화협정문제가 거론되는 이때 주한미군에 공격용 무기의 추가도입과 증액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과 같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의 시대가 열리는데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은 옹당히 재조정되고, 궁극적으로 철수되어야 하며, 미국은 부당한 방위비 분담 증액요구와 무기반입을 중단해야 한다.

4) 한반도 분단과 휴전체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관련국들은 우리 민족의 평화실현의사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

한반도가 분단되는 과정, 그리고 휴전체제가 장기화된 과정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련국들은 한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사를 자국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왜곡해서는 안될 것이다. 관련국들이 평화협정체결과 그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적극 지지하고 보장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실현의 첩경이며 우리 민족에 대한 옹당한 책임이기도 하다.

<Presentation 4 - digest>

Task of establishing a system for peace in Korea

Choi Kyu-youp
(Chief of Policy Committee of N.A.D.U.K)

Though having done nothing to harm mankind, Korean nation has been suffering from the state of ceasefire and division. For the last fifty years the very survival of Korean people has been continuously threatened by military tensions on Korean peninsula. Politics of North and South alike have wandered without any clear direction. The sovereignty has been seriously violated.

North and South Korea are making an unprecedented military race, with 1,860,000 soldiers around the truce line (comparing 668,000 East and West German soldiers at the time of reunification). That means South and North Korea take the burden of \$ 12 billion and \$ 3 billion military expenses respectively distorting the economy and lives of Korean people. If two Koreas fail to put an end to confrontation and to pave the way for the cooperation and reconciliation in near future, they will be left behind the competition in world community while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concentrate their power and energy to expand their economic interest rather than ideology.

As a result for Korean peninsula, which lies in the center of changing order in

northeast Asia, the nation wide effort to institutionalize a peaceful system and to open the way for reunification is desperately needed. So it is time for Korean people to gather the power of nation, instead of being coerced by the interests of neighboring countries, in order to guarantee the peace of Korean nation and to open the avenue toward national reunification.

1. Background of Peace Pact Suggestion

1) The Armistice Pact cannot guarantee peace on Korean peninsula. The Armistice Pact means only temporary suspension of the war between two parties in a certain place and period. It never guarantees complete end of fighting and permanent peace.

2) The clauses of the pact which stipulate the guarantee of minimal peace have already lost their effect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MAC) has been degraded to the place only for complaining the violation of the pact.

a) On June 21, 1957, the U.S. and South Korea announced they would introduce modern weapons to Republic of Korean Army to modernize ROK Army and provide military assistance to ROK Army.

b) In 1958, a limitless arms race was touched off by deploying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c) Despite the clause in the pact that the foreign troops should withdraw within 3 months after signing of the Armistice Pact, U.S. Forces has remained on Korean soil in accordance with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3) As the other parties of the Armistice Pact, namely North Korea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pulled out their representatives on April 28 in 1994 and on September 1 in 1994, the Armistice Pact was dissolved in effect. Also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ttee(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has made sure the implementation and supervision of the Armistice Pact was dismantled when Czechoslovakia decided to pull out of the committee as it was divided into two independent nations - Czech and Slovakia and finally Poland made the same decision in March 1995. As a result the nominal Armistice Pact now has no choice but to

be replaced with a new one.

4) North Korea's drive to win the membership of United Nations and to build normal relationship with the U.S. is making unnecessary to keep the Armistice Pact. UN Command was dispatched to South Korea branding North Korea as a destroyer of peace. But the affiliation of North Korea to UN put North Korea among the peace-loving countries (UN Charter, Section 4 Clause 1), and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ssures that the Armistice Pact has lost its basis of existence.

2. Content of Peace Pact

Considering conventional practice the following should be included:

- a) Complete end to offensive military activities; comprehensive and overall disarmament including reduction of armed forces and weapons which have been overcompensated and the ban of introduction of weaponry
- b) Realization of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 c) Change in status and role of U.S Forces in Korea;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South Korea - U.S. Forces was the only foreign troops that stationed in Korean soil, which directly engaged in Korean War
- d) Identifying the nature of relationship between two Koreas; securing reunification
- e) Arrangement and abolishment of various military treaties signed by either North or South Korea after the Peace Pact
- f) Institution or Organization which can handle and realize aforementioned issues

It is desirable not to discuss the issues like the punishment of war criminals and territorial problems because such issues may touch off an attritional debate due to the peculiarity of relationship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nd between North and South, which is likely to spoil the Peace Pact itself.

3. The Parties of the Peace Pact

The Peace Pact should be signed by the U.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wo things should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 that the signatories of the Peace Pact don't have to be the same countries which signed the Armistice Pact and how to

guarantee the peace on Korean peninsula. And the Peace Pact should include the clauses that assure the substantial fulfillment of the pact as well as legal and systematic liquidation of hostile relationship in the past. Accordingly the problem of how to select the party of the Peace Pact should be approached on the basis of the guarantee of tangible peace on Korean peninsula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onditions of reunification.

In this respect the matter of the party of the Peace Pact should be approached, with the view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U.S. which has direct political and military interest on peace and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The controversial point of the matter is qualification of South Korea as a signatory. This controversy misleads to the argument that if South Korean government qualifies, it can take part in establishing the Peace Pa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if not the Peace Pact between the U.S. and the North Korea should be signed. This implies that if South Korean government can afford to participate, the U.S. should be excluded from pact signing. The real focal point in this issue is, however, the participation of the U.S. Because the U.S. is one of apparent participants debate on the qualification of South Korea and China should be done with the presence of the U.S.

China has already pulled out the People's Liberation Army in 1957 which took part in Korean War and has not been directly involved in military confrontation on Korean peninsula. So not only is it unnecessary to let China join as a party concerned but also creates a possibility of rendering the matter complicated by interests of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izing Korean affairs.

So fa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handed over its control over military operation to the U.S. Even today it only has operational control during peace time. And it makes the argument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qualification as a signatory more complicated that two Koreas have agreed with the principle of nonaggression in the Basic Agreemen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ut as South Korea, with its 650,000-strong military forces, has confronted with North Korea, it may well be an important player in military activities on the peninsula. As a result it becomes evident that South Korea has responsibility and duty as well to carry out the establishment of peace. Also the fact that South Korea promised nonaggression and arms reduction makes it clear that two Koreas recognize each other as a major player of military competition. So to put an end to military confrontation through the fulfillment of the Peace Pact the contribution of South Korea is no doubt needed.

Considering all the items aforementioned the participation of the U.S. is precondition of the Peace Pact and it should be solved among these three parties - the U.S., South and

North Korea.

4. Conclusion

1) The U.S. should stop the policy of maintaining the armistice on the peninsula and take the responsibility as a party concerned in the Peace Pact. The animosity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the main cause of tension on the peninsula, should be ended through the Peace Pact. The suggestion by the U.S. that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sign the Peace Pact in the absence of the U.S. may well be reconsidered for the following reasons:

a) The U.S., as an active participant of Korean War, has its military forces stationed in Korea and wield its political and military influence on Korean peninsula, including a total command during war time. Therefore it cannot be free from providing the cause of tension.

b) However hard two Koreas may try to sign the Peace Pact and realize the disarmament concentrating on ground forces, such factors as the existence of U.S. Forces of air and naval power backed by superior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capability both in South Korea and Japan, and the modernization of South Korean Armed Forces (based on manpower reduction and substantial modernization of military forces) will act as an obstacle in persuading North Korea to sign the pact, which has great possibility of jeopardizing the peace on the peninsula through the pact.

2) The realization of peace in Korea requires the participation with responsibility by both North and South Korea. With total command during war time belonging to Commander of U.S. Forces in Korea, South Korea must feel the restriction in playing a responsible role for realizing peace. Furtherm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not suggested any convincing alternatives and insisted on keeping the Armistice Pact alive. Those kind of passiveness will be of no help in realizing peace. South Korea should make clear of its position about the U.S.'s Strategy for the East Asian-Pacific Region (EASR) which tried to subordinate South Korean Forces to the U.S. and Japan, to block balanced development of Korean Army and to go against the guarantee of peace in Korea. Keeping those in mi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play an active role in assuring peace on the peninsula.

3) The U.S. should clearly explain to Korean people the role of U.S Forces in Korea.

Korean people don't agree with the policy of the U.S. on northeast Asia that it will maintain the same level of forces in Korea after two Koreas agree to live in peace and even after to becoming one.

Though South Korea is paying most expenses for U.S. Forces in Korea, the U.S. demands still more sharing of defense burden. If we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act that U.S. Forces in Korea has much to do with the political and military interests of the U.S., it is not fair for them to demand the increased payment of defense burden. Korean people have no reason to accept the demands by the U.S. asking Koreans of foregoing the charges for land and facilities U.S. forces use much less increase of the payment.

As reported in major Korean newspapers (Tong-A Ilbo, March 14 1995, Han-Kyoreh Shinmun, March 15 1995), now, when the Peace Pact on Korean Peninsula is being discussed, such an unacceptable decision on additional introduction of assault weaponry into U.S. Forces in Korea and subsequent allotment of extra spending should be stopped immediately.

As peace takes its root in Korean soil and the era of reunification finds its way the U.S. Forces in Korea should be rearranged to scale down its role and ultimately be withdrawn. The U.S should also quit demanding unfair increased payment and introducing dreadful weapons.

4) Nations which shared direct or indirect responsibility in the process of division of Korea and prolonged armistice should not distort Korean people's will toward peace and reunification for the sake of their own interest.

<종합 약평>

박 순 경
(8.15 민족공동행사 상임대표)

이삼성 교수와 최규엽 위원장의 논문들에 대해서만 여기서 우선 중점적으로 약평하고자 한다. 다른 국제인사들의 논문들은 아직 입수되지 않아 이 논평에 포함되지 못하나, 차후에 이들에 대한 약평이 부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번 제 2차 국제대회는 우리의 통일운동의 국제적 연대의 장을 넓혀 주는 귀중한 행사이며, 그들의 대회 참여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또한 이삼성 교수의 참여에 대하여 우리는 크게 기뻐하는 바이다.

1. 이삼성 교수의 발제

(1) 통일의 이념적 원칙 :

그는 한국의 통일운동이 '민주적 자본주의', 즉 자본주의의 민주화와 개혁의 폭을 넓혀 나가는, 서구 민주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를 재평가하고 평등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민주적 자본주의'에서 재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자면 80년대의 통일운동의 좌향요소를 다소 수정하고 조절하고자 한다. '민주적 자본주의'는 남한 체제의 원칙이지만, 그는 이것을 보다 더 사회 민주주의적 다원주의적 민족국가와 복지사회로 열어놓는다. 즉, 예컨대 노동계층의 정치적 권리보장과 복지사회를 바탕으로, 국가가 생산수단의 소유와 시장경제의 불평등 억압 구조를 개선하고 민주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주의 세계에서 개인의 자유를 사회 평등을 위한 방향으로 '민주적 자본주의'는 조절되어 있다.

(2) 통일방안 :

이 교수는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즉 남북의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라는 3단계론과 합일하면서, 다만 이것이 연방제의 수용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 수정한다. 김대중 이사장의 남북연합 → 연방제 → 통일국가라는 3단계론에 대해서는 연방제가 중간 단계일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 교

수는 제 1단계로서 남북의 화해·협력 혹은 평화·협력, 제 2단계로서 남북연합, 제 3단계로서 일원적 통일국가를 설정하면서 이 제 3단계를 연방제어로 열어 놓는다. 제 3단계는 남북의 국민들과 인민들의 총의에 따라 일원적 통일국가이든 연방제이든 선택될 수 있도록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협력의 제 1단계는 남한의 강조점이고 출발점이며, 역시 남한이 본래부터 강조해온 인적 물적 교류를 위주하면서 북이 강조하는 평화협정 체결, 평화군축을 위한 대북 접근, 북의 강조점들을 포함한다. 제 2 남북연합의 단계는 북이 강조하는 군축을 비롯하여 남북이 공히 필요로 하는 정치 외교 군사 경제의 공조협력체제 구축을 위주한다. 제 3단계는 일원적 통일국가를 설정하나 북을 고려하여 민족 전체의 민의에 의한 연방제의 선택가능성에 열려 있다. 남의 경제적 비교우위를 고려할 때에 남북의 국민들이 일원적 통일국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며, 그러나 북이 북의 체제 존속을 위하여 연방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방제가 선택된다면 제 4단계로 그 다음에 일원적 통일국가 실현이 모색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경고하기를, 지금부터 연방제나, 아니냐를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며, 그러한 논의는 남북 간의 또 남한 내부의 불필요한 소모논쟁을 야기시킬 뿐이라고 한다.

< 논 평 >

이교수의 학자적 논리 전개는 면밀하고, 오늘의 변화된 세계를 고려하면서 민족 분단과 갈등상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일된 민주민족국가와 사회 건설을 지향하며, 통일문제 접근방식도 남북의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폭넓게 고려하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길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그의 방법론과 소재가 우리의 통일운동 혹은 통일방안 논의를 위하여 좋은 계기와 자료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의 토론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표시해 두고자 한다.

(1) 그의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주적 자본주의'는 서구의 사회민주주의를 포괄하고 오늘의 세계상황에 부합하는 것 같지만, 자본주의 세계의 불평등구조를 궁극적으로 넘어서기 어려울 듯 하고 또한 북한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민족적 자본주의' 원리는 우선 첫째로, 남에 의한 북 흡수통일을 원칙론적으로 방어하기 어렵다. 흡수통일은 독일과는 달리 우리 민족의 크나큰 비극, 정치 군사 사회 경제 전반에 있어서의 혼란과 전쟁을 야기시킬 것이다.

둘째로 45년 8.15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통일운동의 주제는 '민족적 민주주의' 혹은 '민족민주'라는 주제이다. 민족민주를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구 민주주의와 연원을 함께 하면서도 우리 민족 근대사의 항일운동에 뿌리박고 있으며 45년 8.15 이래의 통일운동에서 한결같이 등장한 주제이다. 이 주제는 서구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다 설명될 수 없는 근현대 민족사적 전통을 이룬다. 민족민주를 우편향하기도 하고 좌편향하기도 했지만, 좌우를 포괄하면서 어떤 형태의 새로운 제 3의 통일된 민족국가와 사회 실현을 지향해 왔다. 그것은 '민주적 자본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에서 출발할 수 있고 개혁 자본주의와 개혁 사회주의를 포괄할 수도 있다. '민주적 자본주의'가 그러한 민족민주의 다원성을 포괄할 수 있는지를 여기서 조심스럽게 묻고 싶다.

(2) 이교수의 통일방안의 평화·협력이라는 제 1단계는 사실상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포괄된다. 그래서 통일에 이르는 단계를 다시 설정하자면, 합의서 이행이 통일의 준비단계 혹은 제 1단계로 설정될 수 있다. 남한이 주장하는 제 2단계의 남북연합은 사실상 연방제와 동시에 종합 설정될 수 있다. 북의 연방제론도 남북의 지역 정부들의 독립적 군사권과 외교권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사실상 연합을 포괄하는 셈이고, 노태우 정권시 혹은 정부 일각에서도 연방제 수용의 가능성이 몇 차례 논의되었고, 연합론과 연방제론은 사실상 상호 접근되어 있다. 우리는 북이 자체의 필요 때문에 남북연합을 연방제의 전 단계로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연방제의 전 단계로서의 연합은 통일을 요원하고 불확실하게 만들어버릴 것 같기 때문에 또 북에 대한 외세들의 경제적 공세로 남북에 의한 자주적 통일을 매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연합을 포괄하는 연방제를 제 1단계 혹은 합의서 이행을 제 1단계로 규정한다면 제 2단계로 설정함이 좋다. 연방제는 남에 의한 흡수통일을 방지하고, 남북 두 체제들이 공존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혹은 상호 개혁적으로 발전하면서, 제 2단계 혹은 제 3단계의 단일체제 민족국가를 창출할 수 있는 시간과 계기들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통일방안은 어쨌든 남한에서 상당한 토론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대북 접근을 위하여 민간 통일운동권과 학자들의 통일논의들과 통일방안 제안들을 참조하고 민주적으로 일관된 통일 정책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2. 최규엽 위원장의 발제

(1) 평화체제 구축 :

그의 평화체제 구축론은 전국연합의 면밀한 토론을 거친 종합적인 입장을 대변하면서,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문제를 위시하여 남북의 상이한 입장들, 휴전협정의 위반 사례들, 평화통일에 이르는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 동북아의 평화문제,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 등을 폭넓게 제시해준다.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단계에 속하기도 하며, 군축과 평화협정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2) 평화협정 체결의 관계자 문제

이삼성 교수는 평화협정의 관계자들을 중·미와 남북, 2+2 4자로 언급하는데 최위원장은 미국이 참가하는 남북한 3자를 언급한다. 결국 관건은 북미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연설문>

인권법과 한국의 국가보안법

레녹스 하인즈 (미국, 법률가)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 미국의 인권 지지자들과 [국제 민주 변호사 연합](IADL 이하 국제 민변)에 소속되어 있는 전세계 90개 국의 변호사들과 법학자들의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유엔에 국제 민변의 대표로서, 지난 20년 동안 국제 민변을 대표해 온 것은 제게는 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평화와 통일에 관한 역사적인 회의에 다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 함께 일했던 다른 인권 지지자들과 나눌 것입니다.

유엔에서 국제 민변의 대표로서, 저는 이 기구를 대표하여 연설을 해 왔습니다. 국제 민변은 모잠비크, 앙골라 그리고 잠비아의 제국주의 반대해 자유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북아일랜드 점령, 미국의 푸에르토리코 점령을 반대했으며 모든 나라의 민족 운동을 옹호해 왔습니다. 이 운동들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비준된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을 담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인 '인권법'을 자국 내에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48년은 바로 유럽 파시즘과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해 왔던 일본 제국주의가 패한 해입니다. 저는 세계 도처에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적 문제에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와 같은 회의에 변호사들과 법학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어 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제국주의와 신 식민지의 속박이 오래 지속된 남아프리카의 자유를 위한 국내 국

제적 투쟁에 참가해 왔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에는 소수 백인들의 지배와 남아프리카 사람들의 경제적 정치적 복종을 영속화시키기 위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많은 세월동안, 저는 또한 미국에서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위해 변호 활동을 해 왔습니다. 역사적인 남아프리카 선거기간동안 국제적인 법률감시자의 대표단을 이끌었습니다.

미국 인권변호사로서, 저는 개인의 인권 즉,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권리가 국내법의 적용과 악용으로 침해받는 것을 변호했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도처에서 변호를 할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법은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우선권을 인정해 주는 구조라는 점과 일반 사람들에게 그들이 만든 법을 지지하게끔 강제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남한에서 정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법의 적용과 악용 그리고 남아프리카에서 통치를 위해 아파르트헤이트를 용납한 불공정한 법 사이에 특이한 유사성에 대한 저의 분석결과를 논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민족회의' 지도하의 민중운동은 억압적인 법, 국가의 야만적인 행위 그리고 정치적 반대자를 투옥하는 것으로조차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핵 협상이 결론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난국에 대한 점진적인 외교적 해결 노력들을 1948년 이래 방해해 오고 있습니다. 1948년은 바로 CIA에 의해서 이승만이 남한 민중 위에 군림한 해입니다. 이 억압은 남한의 민주적 권리를 계속적으로 위협했고 남한에 무장하고 전시 태세를 갖춘 수많은 미국 군대를 배치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위협했습니다.

1948년 12월에 51개국이 모여 '세계 인권 선언'을 비준하고 같은 해 9월에 당시 미 국방 장관이 "자유로운 세계에서 자유로운 인간을 위해"라고 연설을 하는 동안, CIA에 의해 임명된 이승만 정권은 독재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채택했습니다.

1948년 이래, 국가보안법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에 의해 확대 강화되어 왔습니다. 독재자들은 현장에 서부터의 민주적 변화를 추구한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악용했으며 국가보안법은 국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세력을 근절하고 북한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정당화했습니다. 이 독재자들은 평양과의 경색국면에 대안을 찾고자하는 청년, 학생, 노동운동의 지도자와 노동자, 그리고 지식인들을 체포했음에도 언제나 남한에는 단 한 명의 정치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남한에 44년이라는 최 장기수 정치범인 김선명씨를 가두어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남한에서 정치범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아마도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해진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팔레스타인, 북아일랜드

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적 수단에 의해 전 세계의 기본적인 민주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에서는, 군사적 위협과 국내적 억압에 의해 외교적 시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1994년 7월 14일 남한에서, 통일에 대한 지지 표현을 제한하는 정부에 반대하여 수 천의 학생들이 시위를 했을 때, 국가보안법 아래서 많은 학생들이 정치적 행동을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점증하는 전쟁의 위협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통일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정권의 정책에 대해 반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습니다.

정치적 억압을 영속하는 미국에 의해 지지되는 억압적인 법을 가지고 있는 남한과 남아프리카 사이의 유사성은 명백합니다. 미국은 1948년 이래 억압적인 남한 정권은 지원하고 있으며 19세기 이래로 인종 차별적인 남아프리카 정권을 지지했었습니다.

흥미 있게도, 남아프리카 소수 민족당이 아파르트헤이트로 알려진 억압적인 법의 본문을 성문화한 시기 또한 1948년입니다. 같은 해에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을 도입했고 유엔은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국가보안법처럼, 아파르트헤이트는 "국가를 전복하는 선전"을 찾아낸다는 미명하에 정치 반대자, 정치 집회를 범죄화하고 민주운동을 금하고 문학, 언론, 영화들을 검열했습니다. 남한에서처럼 남아프리카에서도 억압적인 정권은 집회의 권리, 연설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금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가의 안전을 위한다는 이름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국가 경찰 기구는 조직화된 반대자와 저항에 지지하는 민중들을 위협하기 위해 체포를 악용하고, 보석 없이 구류를 연장시키고, 고문하고, 사회 민주적 합법 연구소들을 폐쇄하거나 탄압했습니다. 이 결과 수많은 정치범들이 생겼습니다. 이 전제정치는 또한 국제적으로 남아프리카의 정치적 망명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국내적으로 인정된 인권에 대한 이러한 모든 폭력은 조직된 저항으로부터 민중들을 단념시키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남한에서, 민중들은 민주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그리고 통일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처벌받아 왔습니다. 집권 정권을 지지하는 것을 거절할 때 반공이라는 이름 하에 노동자, 학생 지도자들의 투옥되고 정치적 반대자들은 추방당했습니다.

남아프리카처럼, 남한은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공산주의에 찬성하는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운동 혹은 사상의 어떤 형태도 실제 그것의 이데올로기 경향이 무엇이든 금지했습니다. 미국의 간섭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북한의 적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어떤 지지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가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아래서 이루어졌습니다. 남아프리카처럼, 학생들 사이의 혹은 공장에서의 모든 민주적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공산주의자의 선전 혹은 간첩의 침투로 조

작되었습니다. 공산주의의 장점에 대해 연구하는 대신 공개서 짓밟아 버렸습니다. 민중의 저항에 민주적 원리를 적용해 경감하는 대신 민중의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준 군사적인 경찰은 선전을 근절하고 경찰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졌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와 그와 유사한 많은 법처럼, 국가보안법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었고 진보적인 민중운동을 파괴하는데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국가에 대항하는 범죄로서 규정되어진 25개의 항목을 한 줄 한 줄 검토해 보면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만든 법과 일치합니다. "적"으로서 북한을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계속되어진 남아프리카의 폭압적인 법의 똑같은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적인 법때문에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으며 최근에 민주적 힘에 의한 정치적 승리를 거둘 때까지 어린이들을 포함해 수 천의 남아프리카 흑인들의 합법적인 살해가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외국 정책에 있어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 두 나라 각각에 민중의 억압을 위한 전문적이고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각 사례에서 미국 정부는 독재 정권을 국제적인 감시와 별개인 "국내 문제"라고 함으로써 국제법으로부터 이 억압적인 정권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전제적인 법의 유사성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한의 민주적 변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남아프리카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정부의 지지 하에 자행된 폭력과 절대 권력에 직면해서 어떻게 남아프리카에서는 민중운동이 사회 정치적인 변화를 위한 힘과 지지를 얻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투쟁이 어느 곳에서도 호의를 가진 사람들이 지원하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권 투쟁이 되었을까요?

아파르트헤이트의 붕괴에 일조한 하나의 중요한 전략은 남아프리카 대다수 민중의 권리를 위한 투쟁들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유엔과 전 세계에 끊임없는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그들의 투쟁에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남아프리카 소수 정권의 억제되지 않는 무법은 비인도적인 국제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이 통과된지 20년 후, 1968년에 유엔 인권위원회는 유엔 헌장과 유엔 인권선언을 위반하는 전제적이고 악명 높은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정책과 소송 수속을 발표했습니다. 추방당한 한 사람으로서 소수 집단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수립에서부터 외국의 포위 공격을 막는 국제 연대 운동을 이룩하기까지는 25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 절대 정치 권력이 아파르트헤이트를 포기하게 하는 끊임없는 압력을 넣었습니다. 요약하면, 국제적 압력은 민중운동의 역량을 확대하며 힘을 주고 결국에는 민주적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분명하게 국가보안법은 유엔 인권선언을 위반한 것이며 더 명백한 것은 1988년 남한에서 채택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남한의 헌법에 "국제법은 헌법에서 비준되고 명시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국내법인 국가보안법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변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을 손상시키는 국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에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국제적 감시의 중요성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늘어나는 남한에서 정치범의 사례는 제네바의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국제 민변은 여러분의 인권 운동과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국,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유럽에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국제법을 어기는 국가보안법 아래서 남한에 인권을 조직적으로 억압하는 사례에 대한 민중의 관심은 국제 사회에서 공유되어야 합니다.

세계 평화와 국제법의 규약은 모든 다른 나라들처럼 남한이 상호 보호를 위해 국제적 감시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48년 파리에서 세계 국가들이 지지한 것처럼, 다음보다 세계 평화에 대해 우려하는 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부정은 대부분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원인이며 유엔의 작업에 위협이 됩니다. 수 백만의 사람들이 매일 테러와 비밀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일일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국가 공동체 안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국민의 권리를 조직적으로 무시하는 정부는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 사회에서 강제와 폭력으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총회에서의 마셜 국방 장관의 연설 1948.12.10)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투쟁 속에서 일치 단결해 법이 적용되는 자유로운 세계 속에서 통일된 사회의 자유로운 국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Speeches>

HUMAN RIGHTS LAW AND THE NATIONAL SECURITY LAW OF SOUTH KOREA

Lennox S. Hinds (Prof. of law, Rutgers Univ. USA)

Ladies and gentlemen, honored guests, sisters and brothers,

I bring you greetings from human rights advocates in the united states and from lawyers and jurist members from the over 90 countries throughout the globe that comprise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IADL). As its representative to the united nations, it has been my privilege to represent IADL for the past 20 years. I am most honored to have again been invited to participate in this historic conference on peace and reunification. Please be assured that I will share all that I learn here with other human rights advocates with whom I work.

As the IADL's representative at the UN, I have spoken out on behalf of this organization in support of the liberation from imperialism of Mozambique, Angola and Jambia ; against the occupation of Northern Ireland by the British, Puertorico by the United States and in support of all national movements seeking the protection in their societies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standards - norms - of human rights law as enshrin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animously ratifi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 in 1948, three years after the defeat of european fascism and japanese imperialism, the former colonial rulers of korea. I have lead delegations of lawyers and jurists from throughout the world to conferences like this which seek to focus world attention on regional problems which threaten world peace and stability.

In the last 20 years, I have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ruggles to liberate Southern Africa from the abiding yoke of imperialism and neo - colonialism and most particularly the imposition of APARTHEID upon the people of South Africa which until very recently perpetuated minority rule and the economic and political subordination of its people.

For these many years, I have also been the lawyer for the African National Congress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historic south african elections lead a delegation of international leger observers.

As a human rights attorney in the United States, I represent individuals whose human rights :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 have been violated by the use of and abuse of domestic law. As will be clear from this presentation, in the United States, as elsewhere in the world, law is the mechanism by which those in political power and authority impose their priorities and will force support for their public policies upon the people.

Today I will discuss my observations as to the unique parallels between the use and abuse of law to maintain political control in South Korea and the codified injustice which permitted APARTHEID to flourish in South Africa - until the movement of the people under the leadership of the African National Congress could not be held in check even by oppressive laws, state brutality, and the criminalization of political dissent.

We meet today as the nuclear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clude. However, efforts to forge a diplomatic resolution of the political impass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leading to peaceful reunification have been prevented by South Korea since 1948 when Syngman Rhee was imposed by the CIA on the people of South Korea. This repression continues to threaten democratic rights in South Korea and the peace of the world as many thousands of U. S. troops stand armed and ready on your homeland.

It is both ironic and tragic that while the 51 member states met in paris in december, 1948 to ratify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the words of the then U.S. secretary of state, "For Free Men In A Free World," in september of the same year, the Syngman Rhee government - installed by the CIA - adopted the national security law (NSL) - to enforce his dictatorship.

Since 1948, the NSL has been expanded and entrenched by successive leaders Park Chung Hee - Chun Doo Hwan - Roh Tae Woo - each of these dictators justified the use of the NSL to crush political opposition by those seeking democratic change on the grounds that these repressive laws are needed to eradicate "subversive" elements and to prevent invasion from the North. At all times these political leaders argue that there are no political prisoners in South Korea, as they arrest youth, students, labor leaders and rank and file and intellectuals who seek alternatives to the impasse with Pyongyang. Even now, when south korean has the dubious distinction of keeping Kim Sun-Myung the political prisoner for the longest period of time - 44 years - the government does not concede the existence of south korean political prisoners.

Today perhaps more clearly than at any other time in the past, there are the possibilities of fundamental democratic changes throughout the world by political means - in South Africa - in Palestine - in Northern Ireland. Yet in Korea, diplomatic initiatives are being undermined by military threats and domestic repression.

In South Korea, on july 14, 1994 when thousands of students protested against government restrictions on expressing support for reunification, under the NSL, many were imprisoned for political activity. They were punished for expressing their opposition the the continuing failure of the government to seek political solutions towards reunification rather than threats of accelerating violence.

The parallels between South Korea and South Africa in which repressive laws supported by the United States were used to perpetuate political repression is unmistakable. Repressive south korean regimes have been supported by the United States since 1948, racist south african regimes were supported by the United States since the 19th century.

Interestingly, the codification by the minority national party of South Africa of the repressive body of laws which was collectively known as APARTHEID also occurred in

1948 : the same year Syngman Rhee introduced the NSL and the united nations adopte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Like the NSL, the law of APARTHEID criminalized political dissent, political gatherings, suspended civil rights, censored literature, the press, and films in an effort to ferret out literature, the press, and films in an effort to ferret out "subversive propaganda." In South Africa, as in South Korea, the repressive regime suspended the rights of assembly, free speech, freedom of associations - all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The state police apparatus used arrest, extended detention without bail, torture, and the elimination or abuse of social democratic legal institutions to intimidate the people from organizing dissent and resistance. A political prisoner population was created. This tyranny also created the international presence of south african political exiles. All these violations of inter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were instituted to dissuade the people of South Africa from organized protest.

In South Korea, the people have been punished for seeking democratic change - and for supporting reunification. The imprisonment of labor and student leaders and the purges of political opponents were imposed upon even anti - communists and conservatives when they refused to adopt the regime in - power's - political line.

Like South Africa, South Korea outlawed the communist party and banned any form of progressive and grass roots movements or thought as "pro-communist", whatever its actual ideological orientation. Any criticism of U.S. intervention was deemed benefitting the enemy in the North. Any support of reunification was punished under the NSL. All in the guise of national security. Like South Africa, all unrest among students or in the workplace was blamed upon communist agitators or infiltrators from outside the country and crushed instead of being investigated on the merits. The people's protests were muzzled instead of relieved in the context of democratic principles. The paramilitary police were used to exterminate agitators and to maintain a police state.

Like the law of APARTHEID and its many progeny, the NSL has been applied indiscriminately and widely to attempt to destroy any progressive mass movements. A line by line review of the 25 articles defined as crimes against the state in the NSL are an echo of the laws of the APARTHEID regime. With the one exception of the designation of North Korea as the "enemy", the NSL could have been copied directly from the tyrannical

codes of South Africa also perpetuated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These criminal codes made Nelson Mandela a prisoner for 27 years and permitted the legal murder of thousands of black south africans including children until the most recent political victory of the democratic forces. Furthermore, in each of these countries, the United States provided technical and material support for the oppression of the people as being in the foreign policy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In each case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lso shielded each of these repressive regimes from challenges under international law by calling them "internal domestic matters" which were to be insulated from international scrutiny.

Apart from the similarity of tyrannical laws, what other lesson can be gleaned from the South Africa experience by those supporting democratic change in South Korea? How did the grass movements for social and political changes in South Africa gain strength and support in the face of government sponsored violence and absolute power? How did they become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struggles that people of goodwill everywhere supported?

One significant strategy that contributed to the downfall of APARTHEID was that these struggles for the rights of the african majority people of South Africa were internationalized. By drawing international attention to their struggles by unceasing applications to the UN and the world community. The unchecked lawlessness of the minority regime of South Africa was made an international crime against humanity. Twenty years after the passage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DHR), in 1968,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APARTHEID were declared by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to be in total and flagrant violation of the UNDHR. It took 25 years,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minority government as a pariah,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solidarity movement which prevented foreign investment and which, despite U.S. efforts, placed relentless pressure upon the incumbent APARTHEID government to give up absolute political power. In short, it was international pressure which enhanced the grassroots movements capacity to gain strength and ultimately to prevail at democratic elections.

Clearly the NSL is in violation of UNDHR and even more obviously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which was adopted by South Korea in 1988. Even more importantly under South Korea's constitution, "international legal codes hold the same validity as domestic codes ratified and promulgated in the constitution." - the ICCPR

then has the force of domestic law notwithstanding the NSL.

If change in South Africa teaches us anything it is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scrutiny of domestic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derog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cases of south korean political prisoners arising under the NSL should be placed before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in Geneva.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stands ready to work with your human rights movements and lawyers as we have in the United States, Africa, Latin America, and Europe. Your people's concerns about the systematic suppression of human rights in South Korea under the NSL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should be placed bef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rld peace and the rule of international law require that South Korea like every other nation be held up to international scrutiny for all our mutual protection. As the nations of the world agreed in Paris in 1948, there is no greater threat to world peace than

Systematic and deliberate denials of basic human rights (which) lie at the root of most of our troubles and threaten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It is not only fundamentally wrong that millions of men and women live in daily terror of secret police, subject to seizure, imprisonment, or forced labor without just cause and without fair trial, but these wrongs have repercussions in the community of nations. Governments which systematically disregard the rights of their own people are not likely to respect the rights of other nations and other people and are likely to seek their objectives by coercion and force in the international field.¹⁾

Thank you - I wish you strength and solidarity in your nation's struggles to become a free people in a unified society in a free world under the rule of law.

1) MARSHALL, G. SECRETARY ADDRESS DEC. 10, 1948 : UN GENERAL ASSEMBLY, PARIS DEPT. OF STATE PUB. 3381(1949)

게리 캠벨 (미국, 목사) J. Gary Campbell (Minister, USA)

이번 주에 나는 여러 해 동안 기대해 왔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참전군인으로서 44-45년 전에 한국전에 참여한 이후 평화를 위한 순례자로서 한국에 돌아오게 된 것이 그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 중의 하나는 기억이라는 것인데 최근 한국을 방문하면서 경험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나에게 미군병사로 지냈던 모든 과거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1950년 9월 17일 미 군함을 타고 한국에 처음으로 도착하여 인천항에 정박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국에서의 가장 첫 번째 기억은 인천시가 파괴되어 연기가 나고 있고 미 전함 미주리호가 인천항으로부터 24마일 떨어진 서울을 향해 포탄을 쏘아대던 장면입니다. 이틀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휘하의 8군 선발대는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1950년 9월에서 12월까지 우리 부대는 인천과 서울 사이의 애스콧시로 불리는 미군기지에 주둔했습니다. 제3병창 사령부의 초기 임무는 8군의 병참물 보급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1950년 12월 후퇴를 시작한 우리는 병력을 인천 지역으로부터 철수하여 부산에 재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후 우리 부대는 또 부산에 투옥된 북한 군과 중

공군의 감시와 보호임무를 받았습니다. 후에 많은 전쟁포로들은 거제도 수용소로 이동되었습니다.

사무원이었던 나는 주로 북한 군과 중공군 전쟁포로의 개별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부대관리에 관한 자료들의 우송과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나는 전쟁포로에 관한 사진과 정보로 이루어진 자료에 대한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서 몇 달을 보낸 후 나는 보병 7사단 31연대 본부로 전출되었고 그곳에서 1951년 12월 한국을 떠날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38선 북쪽 전투 지역에 배치되었고 우리 부대는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전투에 직접 참가한 적은 없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돌아간 후 곧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나의 대학생활 내내 (1953-1956년) 내가 한국에서 경험한 장면과 사람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계속 8-9살쯤 된 귀여운 한국학생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매일 부산의 군 기지 정문 앞에서 병사들의 구두를 닦았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대학생활과 신학공부를 하는 동안 나는 그 귀여운 아이와 주변 사람들의 가난과 고통에 대해서 종종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꿈과 기억들은 내가 목사와 국제 선교사가 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는 나의 역사적인 순간에 거의 반세기 전의 한국에서의 기억들을 최근의 경험과 연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정신적인 경험은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나의 소신을 굳히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그 외 다른 지역에서 알고 있듯이 제도화된 폭력이 극에 달했을 경우에 그 폭력에 저항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 있는 명확한 예들이 있습니다. 즉 그것은 바로 억압 받은 민중들이 독재정권을 쓰러뜨릴 권리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교훈은 전쟁으로 인한 생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30여년의 생활은 나에게 대부분의 전쟁 희생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대해, 부유한 계급이 가난한 계급에 대해 일으킨다는 사실도 깨우쳐 주었습니다. 수백만에 이르는 불쌍한 한국인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전쟁으로 죽고 불구가 되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된 미국인과 유엔참전국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미국 정부를 향한 도덕적 고발이 한국 참전군인인 내가 갖는 특별한 의무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다른 미국인들과 함께, 한미 관계 개선과 반전 평화 정책을 위해 다루어야 할 내용입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중미에서 국제 선교사로서 아내와 나는 그 지역의 전쟁 희생자들과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의 9년간 살았던 니카라과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은 193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후반까지 40년 넘게 가혹하고 억압적인 독재로, 70년대 후반에는 혁명전쟁, 또 80년대 내내 반혁명 전쟁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1990년대 소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겪었던 전쟁과 투쟁과 고통의 세월에 대해 모든 것을 잊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니카라과에서의 생활은 우리에게 과거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영원한 교훈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항상 현존하고, 과거의 혼란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만족할 만한 미래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우리들 중 일부가 과거의 일들을 회상할 때, 니카라과 동료 목사가 지나간 일의 슬픔과 상처가 너무 깊어서 대부분의 니카라과 사람들의 정신이 변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니카라과 동료 목사가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과 유사한 점이 한국사람들에게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번 국제회의가 다루어야 할 내용입니다. 만족할 만한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 분단국의 경험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국의 정의와 평화와 통일에 관해서 생각하고 토론할 때 한국 동포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온 우리 참석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참전용사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내 희망은 최근 전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가 베트남전에 관해 출간했던 책에 나와 있듯이, 미국 내에서 한국전쟁과 미국이 지원한 전쟁들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와 광범위한 재평가를 하는 일입니다.

나는 9년간의 니카라과 생활을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 나라의 가족과 사람들 사이의 단절이 심각함을 알았습니다. 물론 한국 상황과 니카라과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그들은 단절이라는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북한보다는 약간 크지만 인구(450만)에 있어서는 남한 또는 북

한보다 몇 배나 적은 니카라구아에서는 수년 동안 이데올로기와 정치적인 차이로 인해, 또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온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수십년을 살아온 한국인 친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죽음과,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상봉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최소한 우리는 우리 자손대에서의 통일과 화해를 희망합니다.

1986년 이후 미국 장로교 총회는 한국 정부와 민중 또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 화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1년전 장로교 총회는 1995년을 우리 교회에 있어서 평화와 통일의 회년으로 선포했습니다. 또 정의, 화해, 통일의 소명 하에 우리 교회가 한국에 있는 기독교 형제 자매와 함께 연대하여 일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남북한 정부로 하여금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미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외교-무역관계를 정상화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리는 총회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회년을 기념하기 위해 남북한 대표가 참여하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칼을 녹여 보습을 만드는 평화로운 세상은 정의와 평화가 있는 신의 지배에 의해 형성되는 희망적인 세상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세계를 건설하는 일은 기독교인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나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와 여러분들이 곧 통일되는 것이 나의 희망이며 기도입니다. 그리고 남북한 모든 겨레가 통일을 위해 힘을 내서 일하고 용서와 화해가 실현되며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재통일되고 풍부한 문화를 지닌 새로운 한국: 아름다운 국민,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정의와 평화로운 사회의 모범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This week I am living an experience to which I have looked forward for many many years -- returning to your country as a pilgrim for peace after being here 44 to 45 years ago as a soldier of war.

One of our greatest endowments as human beings is the gift of memory.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dimensions of this experience in visiting your country these days well be its value in helping me to remember my personal past as well as something of the collective past of which I have been a part as a U.S. American.

I'm remembering my first arrival in Korea aboard a U.S. military troopship which anchored in Incheon harbor on September 17, 1950. My very first memory of Korea is the sight of the city of Incheon smoking from the destruction of war and the USS Battleship Missouri rocketing artillery shells from Incheon Harbor aimed toward Seoul 24 miles away. Two days earlier an invasion force of the 8th Army under General Douglas MacArthur had made the famous amphibious landing in Incheon. From September to December 1950 my unit was stationed at a US military base called Ascom City between Incheon and Seoul. The initial role of the Third Logistical Command was to help supply logistical support for the U.S. 8th Army. In december 1950 we were part of a retreat process which evacuated troops from the Incheon area and relocated in Pusan. After the move from Incheon to Pusan, our unit

also took on responsibilities for the supervision and caretaking of North Korean and Chinese soldiers imprisoned in Pusan. Later many of the prisoners of war were moved to a camp on Koji Do island.

My work as an office clerk dealt mainly with correspondence and maintenance of files on unit personnel as well as files on individual prisoners of war from North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y memory still retains unforgettable impressions of those documents with photographs and information about each prisoner of war.

After several months in Pusan, I was transferred to Headquarters Company of the 31st Regiment of the 7th infantry Division Where I remained until my departure from Korea in December 1951. During that period I was located somewhere in the combat zone north of the 38th Parallel where the unit to which I was assigned engaged in combat though I personally never participated directly in combat.

My time in Korea was followed immediately by my years of university study. Throughout my university years (1953~56) I was haunted by scenes and people I remembered from Korea. I dreamed repeatedly of one little Korean schoolboy, maybe eight or nine years old, who daily shined soldiers' shoes outside the gate of our army base in Pusan. And during those years in the university and later in theological seminary I thought often

about all the poverty and suffering of that little boy and his people.

Eventually those dreams and memories had much to do with my becoming a minister and international worker of the church.

And now during this historic moment of my life this week with you, of very special value is the connecting of those memories of nearly a half century a half century ago in Korea with more recent experiences.

My studies and my spiritual journey as a Christian and as a minister of the church in Post Vatican II Latin America have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my commitment to peace and non violence and to my opposition to war and violence. While strong cases have been made for the justification of "counter violence" in extreme instances of institutionalized violence like we have known in Nicaragua, El salvador and other places of the world -- that is, the right of oppressed people to overthrow tyranny -- the lessons of history raise serious doubts about the viability of any war.

More than 30 years of life and work in Latin America have taught me that the vast majority of war victims are the poor. And that wars are often waged by rich nations against poor nations or rich classes against poor classes. The moral indictment against the government of my own rich nation for a large share of responsibility in the consequences of the millions of poor

Koreans, US Americans and of other UN -- related nations who were killed, maimed, disabled, orphaned and widowed by the war is a special responsibility which I must actively assume as a US veteran of the Korean War. And that is a legacy with which I along with every other US citizen should deal in working for just policies in US-Korea relations and for policies that will avert other such wars.

During the past decade my wife and I as international church workers in Central America have had a lot of contact with the consequences of war in that region of the world. Particularly Nicaragua, where we lived most of the past nine years, is a land where the people have experienced unspeakable suffering -- from more than 40 years of a ruthless and repressive dictatorship from the mid 1930s to the late 70s, several years of revolutionary war in the late 70s, and a decade of counterrevolutionary war throughout the 80s.

Most recently with the so-called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the 90s lot of voices have been telling us we need to forget all about those years of war and struggle and suffering. But daily life in Nicaragua has brought us constant reminders that the past is not easily forgotten, because the past is ever present, that it's impossible to move on satisfactorily to the future without coming to terms and resolving problems and unsettled accounts of the past. Sometime ago when a group of

us were reflecting about the consequences of those years, a Nicaraguan pastor colleague said to me that the grief and scars of those years are so deep that they "have probably altered the psyche of most Nicaraguans forever"

I suspect that something very similar might be said about the Korean people, something similar to what my Nicaraguan pastor colleague said of his people. And if I understand correctly, that's really what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is all about. The importance of remembering and responsibly coming to terms with experiences of this to me to be one of the most critical points for us participants from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for Korean sisters and brothers as we gather to think about and talk about justice and peace and reunification in Korea.

As a Korean War veteran and as a Christian it is my hope that initiatives in my country reflected, for example, in the recently published book by former U.S. Secretary of Defense Robert McNamara about the Vietnam War will lead to widespread reappraisal of that war as well as a critical review of the Korean War and of other US-supported wars.

My experience in latin America, especially the past nine years in Nicaragua, has introduced me to a lot of brokenness among families and among the people in general of that country and region. There are, of course, many differences between

your situation experience in your brokenness. In Nicaragua which is geographically a little larger (57, 143 sq. miles) than North Korea but many times smaller in population (4.5 million) than either South or North Korea, we have many friends who have been separated from family members geographically as well as by ideological and political differences over a period of many years. We know too that in some cases reunion is now not possible because of death and other reasons. But today at least we hope for the reunion and reconciliation of their children and descendants.

Since 1986 the General Assembly of my church -- the Presbyterian Church (U.S.A.) -- has taken various actions to promote reconciliation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s and people an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bout one year ago the Presbyterian Church (USA) General Assembly proclaimed 1995 to be for our churches "the Jubilee Year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reaffirming our churches' "commitment to work in partnership with Christian sisters and brothers in Korea in the ministry of justice,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urging the governm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to allow separated families to be reunited"; and "urging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to normalize diplomatic and trade relations with the DPRK." And even as we

meet, during these same days in the city of Cincinnati, Ohio the General Assembly of my church -- the Presbyterian Church (USA) -- gathers for a special event with the participation of representatives from both South and North Korea to celebrate this Jubilee Year committing us to Peace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world of peace where "swords are beat into plowshares" is the hopeful image of that world where human relations and systems and governments are transformed by God's Reign of justice and peace. Commitment to the building of that peaceful and non-violent world is therefore basic to my mission as a Christian and as human being.

My hope and prayer is that soon your nation and your people will be reunited, that all of the people in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encouraged to work for that reunification, that the experience of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will someday be real for all of your people, and that the new century will bring a reunited and new Korea in which your rich culture, your beautiful people and your "Land of the Morning Calm" will become a model society of justice and lasting peace.

브라이언 윌슨 (미국, 변호사)
Brian Willson (Lawyer, USA)

나의 조국 미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기타 가난한 지역의 민족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심각한 내전 사태와 인권 침해를 무시한 채, 전세계를 상대로 수많은 폭력적 패권주의를 행사해왔다. 미국이 냉전체제에 참여함으로써 한국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한반도의 분단을 낳았다. 한반도의 분할을 한국민들에게 잔인하게 강요된 이데올로기의 산물이었다. 이제 이러한 상처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도 치료되어야 한다. 바로 통일이라는 화해를 통해서, 미국인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배상과 화해에 대한 미국의 오만불손한 태도를 깊이 반성하는 바이다.

우리 인간은 신체구조나 얼굴 생김새, 그리고 심리구조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 사이의 작은 차이나 개인적 특성들은 사소한 유전자적 다양성과 지리 문화적 환경에 따른 산물일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처한 지리적 조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그리하여 폭력적 성격까지 띠는 태도 및 행동들을 합리화시키는 이데올로기를 양산한다. 그 결과 우리들은 미국에서 자라면서, 나 역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 백인 남성의 오만불손한 가치관과 행동에 길들여져왔다. 그러한 점에서 나 역

시 어쩔 수 없는 미국인일 뿐이다.

이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개인적 및 사회적 치료와 통합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많은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진리를 향한 이러한 과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개적으로 나누고 싶다. 그간의 역사적 상처들을 하나씩 치유하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정직과 정의를 추구하는 노력을 나누고 싶다. 정직한 치료를 위해, 미국에서 비폭력적인 행동들을 실천함과 아울러, 정의와 통일을 추구하는 한국민 모두와도 연대를 나누고 싶다. 나 자신은 물론, 내 조국이 가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한 대열에 헌신하기 위해 여러분의 노력과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싶다. 치유와 정의를 추구하는 이 대열에서, 진정한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이 대열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My countr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violently imposed numerous and various policies of hurtful hegemony in the world while ignoring grave internal holocausts and injustices directed against indigenous people. African Americans, and the poor of all its ethnic groups. the participation of my country in the "Cold War" included the involuntary division of the people and land of the Korean Peninsula, in pursuance of an ideology that was cruelly imposed upon the Korean people. This wound needs healing, both for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Korean, a reconciliation through reunification. A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I want to publicly acknowledge this arrogance and work for reparations and reconciliation.

We human beings are extraordinarily similar in anatomy, physiology, and psychic development. Our small differences and individual uniquenesses are determined by slight genetic variations and local cultural upbringings. Too often, however, our local conditionings teach us "ideologies" that often rationalize attitudes and behaviors that are hurtful and violent to others, while promoting our own sense of superiority. Almost by virtue of my upbringing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 have been complicit at different times and to varying degrees in the adoption of the arrogant

values and behaviors of an "American" white male. I am not unusual in this sense.

It seems to me that our mutual challenge now is to strive for personal and societal healing and wholeness within a planetary context. I want to share openly this process with others as experiments with truth, that includes taking risks : seeking honesty and justice in all of our relationships while addressing historical wounds. As I strive through nonviolent practices for this honest healing in the United States, I am in solidarity with all Koreans who seek justice and reunification in your culture and on your Peninsula. I want to learn from your efforts and experiences so that I might better contribute to the search for justice and healing in myself, and within my own country. I look forward to sharing with you in this process of seeking healing and justice, the foundations for genuine peace.

● 연대사 3 (Solidarity message 3)

로이 윌프 (미국, 평화운동가)
Roy Wolf (Peace Education Consultant, USA)

내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40년 전이었다.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에 대한 대강의 교육을 받고서(미군 병사로서 말이다), 그 모든 것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인들에게는 분단을 의미했다.

1995년, 나는 다시 한국에 왔다. 이번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 평화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이들과 어떻게 손을 잡고 일할 것인지에 대한 밀도 깊은 교육을 받고서.

이번 기회가 한국인들의 통일 -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통일까지도 - 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평화를 향한 행진의 하나이기를 바란다.

I first traveled to Korea forty years ago, after extensive training (as a soldier in the U.S. Army) in how to kill and destroy. All that, we were told, in order to keep the peace which meant to keep the Korean people divided.

I return to Korea in 1995, after thirty-five years of intensive training in how to live, and how to work with others in order to build up and to make peace.

This time I hope to be part of a peace process which will lead to reunification of all Koreans - and perhaps many others.

● 연대사 4 (Solidarity message 4)

율겐 마이어 (독일녹색당 국제담당)
Juegen Maier (Germany)

여러분들은 해방50년 분단50년을 맞아 중요한 대회를 개최합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냉전의 종말을 축하하는 반면 여전히 냉전이 계속되는 유일한 곳이 바로 분단된 한반도입니다.

핵문제의 건설적인 해결은 남북한이 통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은 여전히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를 방문하거나,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으며 통일운동과 관련된 법적 구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한이 대결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기회입니다. 권위적인 정부가 아니라 민중들이 민주적으로 통일의 방법을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중들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조만간 정부

도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독일은 40년만에 분단을 극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동등한 통일이 아니라 동독이 서독에 의해 급격하게 흡수통합 된 것에 대해 불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이후 여러 측면에서 급격한 통일의 부정적인 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통일은 특히 선택의 여지가 없는 동독의 민주적인 압력에 의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식의 통일이 한국에서 재현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주요한 교훈은 얻어야 합니다.

나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성공적 대회를 기원합니다.

Dear friends,

Fifty years after the liberation and division of Korea you are holding this important conference. While all over the world people have been celebrating the end of The Cold War there is one place where it is still as vivid as ever : the divided country of Korea.

Important steps have been made : the two Korean states have joined the United Nations, the nuclear conflict has been negotiated constructively. but where are the concrete steps for the people ? Korean citizens still cannot even visit the other part of their country, cannot contact their relatives, are jailed for advocating a positive approach to the other side.

It is high time that the Cold Wa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overcome. Let the people democratically decide how they

want their country to be reunified, not authoritarian governments. When the people are reunited, the states will sooner or later follow.

Germany's division has been overcome after 40 years. Many people were unhappy about the rapid pace, the way East Germany was annexed to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rather than entering an equitable process of unification. In many ways we are feeling negative after effects of this very quick unification. However, it must be accepted that it had been popular pressure especially from East Germany that left no other alternative.

The German way of reunification cannot be copied in Korea. But there are important lessons to be learnt from it. It is a great honor for me to participate in this important conference in Seoul.

Let it be a successful conference.

● 연대사 5 (Solidarity message 5)

줄리엣 치나우드 (말레이시아)

Juliette Chinaud (International Catholic Foundation-Asia Dept, Malaysia)

한국에서 열리는 '95 국제 평화대회에 저를 초청해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이 한국에서의 두 번째 국제행사 참석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976년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 곳에서 분단된 한국의 사람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들은 일본에서 몇 세대를 걸쳐 바깥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결국 이 영웅적인 집단 속에서 일부는 일본인들의 공공연한 멸시와 조롱뿐만 아니라 군사적 힘에 의한 인위적이고 어리석은 분단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향을 쉽게 부를 수 있는 것은 통일조국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리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된 조국, 하나된 한반도를 위해 지금껏 잃어버려야만 했던 시간들이 이미 너무 오래되고 늦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I thank the International Preparatory Committee for inviting me to the 1995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in Korea. It is particularly poignant for me as this would be my second Korean Peace Conference. It was in 1976 in Japan, where I first met the women and men of a divided Korea, who had been exiled for several generations in Japan. At all times, among this heroic community, one sensed the pain, artificiality and ludicrousness of this forced separation, as well as the indignities of Japanese official treatments. It is an understatement to say that the yearning is great to return to a unified Korea that one can simply call "home." This vision is already many years too late and no time must be lost now for a unified homeland, a unified Korea.

다닐로 비즈마노스(필리핀, 바얀 의장)

Danilo P. Vizmanos (President, BAYAN-Philippines)

먼저 1995년 7월 14일, 15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회의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형제애를 보낸다.

우리 바얀 필리핀즈는 한국의 통일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 유지를 위한 전제조건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국민들은 지난 50년동안 자신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헤어져 있었다.

2차대전 직후 한국에 38도선을 강요한 것은 1945년에 열렸던 포츠담 회담의 정치 역학이었다. 강대국들은 사전 통고도 없이 한국민에게 분단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했을 뿐이다. 그것은 유엔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었다.

한반도의 분할은 평화유지라는 애초의 명분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오히려, 분단된 한반도는 1950년대 초반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을 위한 대리전장으로 전락했을 뿐이다. 전 국토가 철저히 파괴당했고, 한국민들은 무력분쟁의 가장 큰 희생자로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전쟁의 수혜자들은 미국과 소련, 일본의 무기 제조업자·군수관련 산업체였다.

미국은 42년이 지난 지금도 남한에 군사 기지와 4만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이처럼

애매한 미군의 존재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최대 걸림돌이 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민들의 독립과 주권, 그리고 민족적 자존심을 침해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즐기고 있다.

또한 필리핀과 한국군은 군사 지원 협정과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 미 국방성의 부당한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두 나라의 중요한 경제정책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IMF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있다는 점이다.

이들 두 나라에서 전국적인 차원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위와 같은 노예적 종속관계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미 제국주의가 지원하는 억압적 체제를 깨뜨리기 위한, 그리고 이른바 '새로운 세계질서'라는 미명하의 경제적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한 역사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두 나라의 민족민주운동세력은 특히 억압적 체제 하에서 수행되는 투쟁과정 속에서 얻은 각자의 경험과 교훈을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두 나라의 진보세력은 그 동안 불법적인 장기 구금, 고문, 즉결 재판, 실종 등과 같은 온갖 종류의 인권 침해에 노출돼 왔다. 이러한 탈법적

방법들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말살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를 위해 싸우는 한, 우리는 우리의 억압자들이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강고한 투쟁을 꺾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바얀은 다른 나라 진보세력들과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필리핀에서의 외국 군대 철수와 한반도의 통일이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임을 굳게 믿는다.

우리는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회의가 커다란 성과를 올릴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

BAYAN-philippines extends fraternal greetings of international solidarity to all participating organizations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being held in Seoul on 14~15 July 1995.

We in BAYAN-philippines believe that the reunification of Korea is a prerequisite to lasting peace not only i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n the entire Asia-Pacific region.

The people of Korea have been divided for the last 50 years not because they wanted it that way. It was power politics at the Potsdam Conference in 1945 that dictated the postwar partitioning of Korea at the 38th parallel.

The Korean people were never consulted by the big powers. They were merely told to comply with a fait accompli. It was a blatant violation of the UN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for peoples under former colonial rule.

The partition of Korea did not serve the ends of peace. Instead, the divided country became a battleground for superpower hegemony in the early 1950s. The entire country was devastated and the Korean people suffered heavily as the main victims of the armed conflict.

The principal beneficiaries of the war were the armament manufacturers and war-related industries in the US, USSR, and Japan.

Some 42 years later the US still

maintains military bases and a permanent force of more than 40,000 combat troops in South Korea. This indefinite US military presence in the peninsula has become a major obstacle to the reunification of Korea.

US military forces also enjoy extraterritorial rights that infringe on the independence, sovereignty and national dignity of the Korean people.

In a parallel situation, the military forces of the Philippines and south Korean are unduly influenced by the Pentagon through military assistance agreements and mutual defense treaties. Furthermore, major economic policies in the two countries are dictated by the US-dominated IMF to the detriment of the broad masses.

It is the reality of this master-vassal relationship that gave rise to the formation of national democratic movements in our countries. We are now both waging a historic struggle for liberation from the chains of repressive rule backed up by US imperialism and the shackles of economic bondage under the so-called "New World Order."

Our respective national democratic movements can benefit one another through a sharing of experiences and lessons in the course of the struggle especially under conditions of repressive rule.

The progressive forces in our countries have been subjected to all kind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include illegal and prolonged detention, torture, summary

execution, and disappearances. These extra-legal methods are intended to break our will to struggle. But as long as we are fighting for a just cause we will not allow our oppressors to break our will and suppress our militant struggle.

Through international solidarity with progressive organizations in other countries, we in BAYAN-philippines firmly believe that an end to foreign military presence in the peninsula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ople will be a reality in the near future.

We are likewise confident th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will be an outstanding success!

● 연대사 7 (Solidarity message 7)

에우헤니오 치카스 마르티네스 (엘살바도르, FMLN 소속의 국회부의장)
Eugenio Chicas Martinez (El salvador)

우리는 천년왕국의 문 앞에 있습니다.

4년 후 실행될 우리의 모든 조치는 현세대와 다음세대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보장해주는 정권과 정부, 인민이 모두 함께 건설할 미래의 특별한 모습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문제들에서 해답을 찾으려하는 최소한의 정치활동에 민중들이 계획적으로 몰두하는 것은 민중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 우리 민중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상에 대한 의견절충 또는 그의 도달.
- 사회정의로 경제발전의 길을 찾는 것,
- 환경생태계의 파괴를 원상으로 복귀시키는 것,
- 전쟁과 대립의 위협을 가시는 것.

11년이 넘게 치러진 전쟁으로부터 벗어난 살바도르 민중들의 지속적인 투쟁의 경험에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다수의 이해를 반영한 국가적 콘센서스에 도달하는 것.
- 대화와 교섭으로 전쟁의 위협을 벗어나는 것.

- 평화와 인간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주 역량의 결집.
- 민족문제 해결로서의 독립.

전세계와 우리의 작은 나라는 한국에서의 이번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대하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오고는 있으나 우리는 한민족의 슬기와 지혜를 통해, 당신들의 정치지도자들이 어떻게 평화와 연대, 화해와 대단결을 실현하는가, 어떻게 코리아를 인류 희망의 상징으로 만들어낼 것인가를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95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대회의 대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We are at the door of initiating a third millennium. all of the actions that will be carried out in the next four years are the fundamental ba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future that we will build together with the people, political forces and governments, to ensure a better world for these and future generations.

It is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the people to get involved in planning the policies and actions necessary that permit the resolution of grave problems that are confronting humanity, among them :

- consolidate or reach the models of democracy that our people aspire to.
- find the path to economic development with social justice.
- to revert the ecological disaster of the environment in the world.
- dismantle the threat of war and confrontation.

In the experience of struggle of the salvadoran people, that emerged from eleven years of war, there are indispensable conditions to confront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 a) reach a national concensus that reflects the interests of the majority.
- b) dismantle the threat of war, giving privilege to dialogue and negotiations.
- c) unity of the democratic forces that

are striving for peace and human development.

d) independence in the solution to national problems.

The entire world and our small country are watching the events in korea : the tensions worries us greatly, but we have confidence in the wisdom of the korean people, that know how to orient your political leaders about the path to peace, solidarity, reconciliation and national unity ; to make korea a symbol of hope and an example for humanity.

For this we send you greetings and our desire for much success in the conference for peace in korea."

The South Korean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50th Anniversary National Liberation

1. The purpose of the ceremony

- 1) Opportunity for joint celebration by South and North Korea of Korean Liberation Day.
 - Opportunity for joint celebration of South, North and Overseas Koreans
 - Promoting multilateral exchange and meeting in person of people in every field.
 - Realizing wide-ranging solidarity of reunification movements
- 2) Fostering substantial atmosphere of peace and reunification
 - Solving the current problems of overcoming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 Carrying out "AGREED FRAMEWORK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 Suggesting the vision for reunified Korea
- 3) Liquidating the remnants by Japanese colonial rule
 - Correcting the history distorted by Japan
 - Establishing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 Keeping the vigilance on Japan's neo-militarism.

2. Introduction of main events

- Joint celebration rally for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n Liberation Day, Aug. 15th.
(by North and South Korea)
 - Time : 15th. August.
 - Place : Panmunjum.
- An Eve Festival of Joint Celebration for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n National Liberation.
 - Time : evening. 14th. August.
 - Place : Seoul, Peongyang etc.
- Plenary Discussing Session on National Reunification.
 - Time : 13th. August.
 - Place : Seoul, Peongyang etc.

3. Hosting Organization

- 1) Founding Ceremony
 - Held in amphitheater at Yonse University with a crowd of 6000 people on 22th April 95
- 2) Members of the Board
 - *Standing Co-representative
 - Kim Sang-Keun. Minister, Chairperson Of Human Rights Committee In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 Kim Joong-Bae. Co-Representative in People's Solidarity Participatory Democracy
 - Keun Young-Gil. Co-Representative in Korean Council Of Trade unions
 - Park Soon-Kyung. Phd.Theology, Former Professor in Mogwon University
 - Lee Chang-Bok. Standing Chairperson in K.N.C & NADUK
 - Ham Se-Ung. Priest, Former Co-Representative in Catholic Priests Association For Justice

Korean National Congress for Reunification (K.N.C)

1995. 7.

Standing Chairman
Kim, Sang-Keun
Park, Soon-Kyung
Lee, Change-Bok

F4, HOJEONG Bldg
21-17, Myeong Ryun-Kong 2GA, Jongro-Gu
Seoul, Korea
PHONE : (02) 745-5872 FAX : (02) 745-5874

OBJECTIVE OF ORGANIZATION

'Korean National Congress For Reunification (or, K.N.C)' was organized on July 2, 1994, inheriting half-century-long tradition of reunification movement, to actively cope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anges of political situation, which is changing rapidly, and to gather forces of the mass to move up long fostered wish of national reunification. 'K.N.C' is consisted of women, artists, religious people, national movement activists, teachers, enterprisers, health and medical personnels, workers, peasants, youth and college students, which covers almost all generations, classes, occasions and institutions. 'K.N.C' is working as a true representative of civil reunification movement with major goals of 'Popularizing Reunification Movement', 'Regimentation Private Reunification Forces', and 'Strengthening National Unity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Platform

1. Realizing national reunification in principle of independence, peace and national unity.
2. South and north Korea respect each other and achieve a flourishing unified nation.
3. Reject foreign intervention, and realize national independence through unity of all Koreans ; south, north and abroad.
4. Improve any legal and structural factors which block reunification, and achieve reunification culture.
5. For the settlement of peace in Korean peninsula, realize conclusion of Peace Treaty, mutual arms reduc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in steps, and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6. Watch all the factors threatening peace and safety of northeast Asia such as Japan's militarization.
7. Solidarity globally with whoever supports independent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MAJOR WORKINGS

1. Organizing
 - Covers all the patriotic sectors, including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longing for reunification.
 - Organize local chapters nationwide.
2. Practice
 - Movement to realize peace of Korean peninsula.
 - Urging movement to practice inter-Korean agreement.
 - Activate private level talks and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3. Research
 - Reunification plans and their agreement.
 - Holding monthly 'Reunification Forum'
4. Public Relations
 - Publish newsletter 'Reunification Fountain'
 - Publish educational resources (on ideas to peace and reunification)

5. Education

- Open a reunification school.
- Produce audio-visual material on reunification, such as video tapes.

6. Solidarity

- Realize solidarity and exchanges with Koreans abroad, international peace movement organizations and national movement activists of third world countries.

7. Special activities (August 15, 1995)

- Propose 'Grand Festival for National Reunification (tentative)' to governments, political parties and organizations of in and outside of Korea, and promote it taking opportunity of August 15, 1995, the 50th year of national division.

MAJOR ACTIVITIES

1994. 7. 2.

Held 'Founding Conference of Korean National national congress For Reunification'

- Total of 600 organizations participated.

1994. 8.15.

Participated 'Praying Rall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and 'Pan-Korean Congress For Reunification'

1994. 10. 7. ~ 10. 10.

Held '9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Peace, Friendship, and Solidarity in Korea(ICPK)'

1994. 7. 1 ~ 8 .15

Launching nation-wide petition collecting movement for realization of peace on Korean Peninsula - 100,000 signatures collected

From 1994 1.

Publishing 3,000 copies of monthly magazine, "Tongil Sam(Well of reunification)"

1995. 4.

Distributing 30,000 copies of "Tongil Heumang(reunification-wishing) pocketbooks"

1995. 8.

Planning of The Ceremony For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n National Liberation.